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PRIMARY ISSUES

미 국	美 행정부, 지적재산 보호 강화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공표	8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정문 초안 공개	14
	<b>[특집]</b> 미국 '스피셜 301조' 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26
일 본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 발표	32
	日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물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39
	<b>[특집]</b> '지적재산추진계획' 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전략	54
중 국	中, 지적권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추진	60
	中 3개 저작권 단체,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규정 발표	63
유 럽	獨 연방최고법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예방의무 일부 인정	72
	英,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한 「2010 디지털 경제법」 발효	76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회원국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제시	91
국제기구	BSA, 2009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발표	104
	유네스코,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 구축	110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PRIMARY ISSUES

미 국	美 행정부, 지적재산 보호 강화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공표	8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정문 초안 공개	14
	[특집]미국 '스페셜 301조' 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26
일 본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a 발표	32
	日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물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39
	[특집] '지적재산추진계획' 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전략	54
중 국	中, 저작권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추진	60
	中 3개 저작권 단체,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규정 발표	63
유 럽	獨 연방최고법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예방의무 일부 인정	72
	英,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한 「2010 디지털 경제법」 발효	76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회원국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제시	91
국제기구	BSA, 2009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발표	104
	유네스코,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 구축	1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미국 | USA

- \* 美 행정부, 지적재산 보호 강화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공표 .....8
- \*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정문 초안 공개 .....14
- \* 코스트코社 vs. 오메가社의 법적 공방: 병행수입에 대한 ‘최초판매의 원칙’ 해석 .....17
- \* 美 의회, 「2010 위성방송확대 및 지역주의 법안」 승인 .....20
- \* 美 법무부,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이행 위한 전담역할 제시 .....23
- [특집] 미국 ‘스페셜 301조’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26



## 일본 | JAPAN

-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 발표 .....32
- \* 日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을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39
- \* 日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 대책 발표 .....41
- \* 日 지적재산교육협회,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적재산 검정시험 도입 .....47
- \* 日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 음원정보처리시스템 「플루조」 구축 .....50
- [특집]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전략 .....54



## 중국 | CHINA

- \* 中, 지재권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추진 .....60
- \* 中 3개 저작권 단체,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규정 발표 .....63
- \* 中 상하이 법원, 자국 대기업에 대한 SW 저작권 침해소송에 MS社 승소 판결 .....65
- \* 中,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위한 「2010 그린북마크 캠페인」 개최 .....67



## 유럽 | EUROPE

- \* 獨 연방최고법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예방의무 일부 인정 .....72
- \* 獨 음악저작권협회, 월드컵송 중계 저작권료 징수 .....74
- \* 英,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한 「2010 디지털 경제법」 발효 .....76
- \* 英 위긴(Wiggin)社, 2010년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 .....82
- \* 英 오프콤(OFCOM), 「2010 디지털 경제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초안 발표 .....87
- \* 스페인 지적재산관리협회(SAGE), 공CD 제조업체에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89
- \*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회원국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제시 .....91
- \* 유럽 16개 저작권 관련 단체, 유럽연합(EU) 차원 저작권 예외규정 마련 위한 공동선언 .....94
- \* 유럽의회 녹색당, 저작권자 보상 및 문화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97

유럽



## 국제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BSA, 2009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발표 .....104
- \* 유네스코,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 구축 .....110

오세아니아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북미 지역 미국

---

美 행정부, 지적재산 보호 강화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공표	8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정문 초안 공개	14
코스트코社 vs. 오메가社의 법적 공방: 병행수입에 대한 ‘최초판매의 원칙’ 해석	17
美 의회, 「2010 위성방송확대 및 지역주의 법안」 승인	20
美 법무부,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이행 위한 전담역할 제시	23
[특집] 미국 ‘스페셜 301조’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26

---



## 美 행정부, 지적재산 보호 강화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공표

미국 행정부의 빅토리아 에스피넬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은 지적재산의 보호 및 정부 집행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2010년 6월 22일 공표함

### 美 지적재산집행 조정관,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 계획」 공표

- 미국 행정부의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 지적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10년 6월 22일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공표함.
-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은 위조기기 및 불법 SW 차단과 정부 집행기관 간의 협력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방지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법집행을 강조함.
  - 동 전략계획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 대한 33개 집행계획으로 구성됨.
- 향후 지적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연방정부기관과 함께 120일간에 걸쳐 침해행위의 범위, 이해관계자의 의무사항, 기술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적재산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의 주요내용

#### ① 정부의 출선수범

##### □ 미국 정부기관의 불법복제를 구매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워킹그룹 설치

-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및 기타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이 지정한 참가자로 워킹그룹이 구성됨.

- 이 워킹그룹은 지적재산집행조정관에 의해 소집되며 첫 번째 소집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연방 구매담당자에 의한 합법 SW 이용

- 합법 SW 이용에 대한 중요성 부여와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절차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는 기존의 관행을 검토하여 합법 SW 이용 장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 정책입안과 국제협상에서의 투명성 제고

- 미국정부는 이해관계자 접촉, 의회 및 자문위원회로부터의 자문,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참여를 독려해야 함.
- 「2010 대통령 무역정책계획(President's 2010 Trade Policy Agenda)」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무역협상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권리자와의 정보교류 확대

- 불법복제물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정품과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기에 권리자와의 협력을 통해 침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피해자와 권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 지적재산 침해 문제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소 대상 지적재산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및 권리자와 교류를 가질 수 있음.

□ 스페셜 301조 작성 협력

-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지적재산집행조정관과의 협조 하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침해시장(notorious markets) 목록을 작성해야 함.

□ 침해행위 수사 및 보고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기소현황을, 국토안보부(DHS)는 침해로 인해 압수된 물품현황을,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은 법집행 활동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③ 효율화 및 조직화

□ 낭비와 중복 방지를 위한 집행활동 조정

- 다수 집행기관이 지적재산 침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은 연방기관 및 국가지적재산조정센터(IPR Coordination Center)와 협력하여 업무중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local) 단위 법집행 조정

-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CBP), 연방수사국(FBI),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ICE) 및 각 연방기관이 지적재산 범죄수사에 책임을 지고 지적재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각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자원의 중복 이용이나 기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지적재산 침해 대응을 위한 해외 주재원의 효율성 제고

- 미국정부는 관계기관에 법집행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해외

인력이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사관 인력에 대한 ‘지적재산 집행업무계획(IP enforcement work plans)’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실행을 위해 대사관 간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함.

#### 4] 국제적 권리 집행

##### □ 해외 불법사이트 제재

- 국가 경제안보(national economic security)를 약화시키는 해외기반 웹사이트와 웹 서비스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국제사회와 민간영역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 법집행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법을 적용해야 함.

##### □ 법집행 관련 외국과의 협력 강화

- 국가간 법집행을 위한 협력은 국제적 규모의 침해와 복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이므로, 국경을 초월한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외국정부와 공식적 상호협력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음.

##### □ 스페셜 301조 액션플랜 수립과 이행

- USTR은 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국가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법률적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함.
- 또한, 스페셜 301조 액션플랜의 이행 강화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식재산집행 조정관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

#####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를 통한 지적재산 집행 강화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보건기구(WHO),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공동 교육·훈련, 우수사례 공유, 법집행 교육 등의 기회를 모색해야 함.

## ⑤ 안전한 공급망 확보

### □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 수입업자가 지적재산의 침해물품인지 모르고 수입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세관국경보호국은 지적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압수권한은 있으나 행정처벌을 내릴 권한은 없으므로, 미국정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과 관련된 수출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권한을 세관국경보호국에 부여해야 함.

### □ 인터넷상 지적재산 침해 감소를 위한 협력

- 콘텐츠 소유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광고대행사, 검색엔진, 결제대행사(payment processors) 등이 모두 협력하여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⑥ 데이터 기반 정부시스템 구축(building a data-driven government)

### □ 지적재산 보호 예산의 낭비 방지

- 미국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적재산 집행과 관련한 인력, 기술, 프로그램 등에 투입된 자금을 매년 추적·관리해야 함.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은 매년 예산 자료 요청(Budget Data Request; BDR) 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함.

□ 지적재산 집약산업(IP-intensive industries)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지적재산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므로, 미국 경제에서 지적재산이 차지하는 범위와 역할에 대한 분석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 경제효과 분석을 위해 상무부(DOC) 산하 ‘경제통계국(Economic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ESA)’은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의 조정 하에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야 함.

□ 미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미국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자사의 지적재산이나 혁신적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수출을 꺼려하고 있으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상무부는 현재 미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교육, 지침(guide), 자금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미국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해야 함.

(IPEC, 2010.6.22)



##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정문 초안 공개

미국 무역대표부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정문 초안을 2010년 4월 21일에 공개함. 이번 초안에는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 집행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으나, 동 협상과 관련된 개별 참가국들의 입장은 표명되지 않음

### 美 무역대표부(USTR),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의 협정문 공개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협상 참가국들은 2010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제8차 ACTA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의 강화를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협정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EU(유럽연합 및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ACTA의 협정문 초안을 2010년 4월 21일 공개함.
  - 협정문에는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국경조치(border measures), 형사집행(criminal enforcement),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 집행(technological enforce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다만, 동 협상과 관련된 개별 참가국들의 입장은 표명되지 않음.
- 한편, 참가국들은 금년 내 최대한 조속히 동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스위스 루체른(Luzern)에서 제9차 ACTA 협상을 개최해 비정부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

ACTA 협정문 초안의  
쟁점

□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 민사집행권한의 범위와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킬 것인지 저작권과 상표권에만 국한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 법정손해배상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지는 의견과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으로 양분됨.

□ 국경조치(Border Measures)

- 회원국은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압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도록 함. 다만, 국가별로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국경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회원국은 여행객의 개인수하물(travelers' personal luggage)이나 소량배송물(small consignments)에 속하는 비영리적 상품에 대해서는 국경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형사집행(Criminal Enforcement)

- 영리적 목적의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한편 동 협정문에 ‘영리적 목적의 침해행위’의 판단기준인 ‘금전적 이익’에 대해 ‘어떠한 가치(anything of value)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라는 불명확한 표현이 이용됨으로써 해석의 범위를 확대시킴.

□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 집행(Technological Enforce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세이프하버 조항(Safe Harbour Provision) 충족의 전제조건으로 ‘삼진아웃제(Three Strikes)’를 강제규정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 세이프하버 조항(Safe Harbour Provision)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불법복제물을 발견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을 때, 온라인서

비스제공자(OSP)가 불법복제물을 즉시 삭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을 말함.

- 공개된 협정문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면책되기 위한 ‘통지와 삭제(notice-and-takedown) 조건’의 규정과 세이프하버 관련 3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삼진아웃제를 의무화하지는 않음.
  - 다만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자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힘.
- 우회금지(anti-circumvention)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방지를 위한 민·형사 책임을 개별국내 법령에 도입하도록 함.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우회기기의 판매금지를 규정함.

*(USTR, 2010.4.21)*

*(Public Knowledge, 2010.4.21)*

*(Consolidated Text Prepared for Public Release, 2010.4.21)*



## 코스트코 vs. 오메가의 법적 공방: 병행수입에 대한 ‘최초판매의 원칙’ 해석

코스트코(Costco)사가 해외에서 제작된 오메가(Omega) 시계를 수입해 판매하자 오메가(Omega)사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사건에 대해, 2010년 4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임. 이 사건의 쟁점은 해외에서 제조된 진정상품(정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의약품 및 타 진정상품 관련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사건의 개요

- 코스트코(Costco)사는 명품시계 제조업체인 오메가(Omega)사의 허락 없이 스위스에서 제작된 오메가 시계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정상가보다 35% 저렴하게 판매함.
  - ※ 오메가사는 스위스에서 시계를 제작해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를 통해 전 세계로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임
- 오메가사는 코스트코사의 행위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6조(3)호와 제602조(a)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2004년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연방저작권법 제106조(3)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copies)이나 음반(phonorecords)을 판매, 기타 소유권의 이전, 대여(rental), 리스, 대출(lending)에 의해 공중에 배포하는 행위”

#### 연방저작권법 제602조(a)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얻지 않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복제물 또는 음반을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은 제10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에 침해가 되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 코스트코사는 연방저작권법 제109조(a)항에 규정되어 있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근거, 오메가사에게는 최초 판매 이후 발생하는 추가

적 양도(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코스트코社의 판매행위는 제 106조(3)호를 위반하거나 제602조(a)항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 연방저작권법 제109조(a)

“제106조(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한편, 오메가社는 코스트코社가 판매한 시계의 경우, 미국이 아닌 스위스에서 최초로 제작·판매된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제작된 복제물만을 의미하는 제109조(a)항의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particular copy lawfully mad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코스트코社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약식판결을 내린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동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오메가社의 손을 들어줌.
- 이후 2010년 4월 19일,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코스트코社가 제기한 상고(certiorari)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함.

## 논의의 쟁점 및 법원들의 입장

### □ 논의의 쟁점

- 제109조(a)항에 규정된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이라는 문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됨.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인 오메가社가 스위스에서 제작한 시계가 제109조(a)항의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 각 법원간 해석 이견

#### ① 지방법원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998년 연방대법원의 「Quality King Distributors, Inc. v. L'anza Research Intern., Inc. 사건(이하 ‘Quality King 사건’이라 함)」을 근거해 볼 때 해외에서 제작된 복제물에도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함.

② 연방순회항소법원

- 제9순회항소법원은 제109조(a)항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해외에서 제작된 상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연방대법원의 ‘Quality King 사건’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제작된 복제물이 문제가 된 것으로 그 당시 연방대법원은 해외에서 제작된 복제물에도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본 항소법원의 해석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해외에서 제작·판매된 복제물에 제109조(a)항을 적용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수입되는 복제물을 통제하기 위한 제602조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되므로, 제109조(a)항의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의 의미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로 한정한다고 판시함.
- 관련 사건에서 타 법원은 제9순회항소법원과 또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음.
- 2009년 「Pearson education v. Liu」 사건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제109조(a)항의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은 ‘복제물이 제작된 장소가 아닌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비롯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의약품 등의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541 F. 3d 982)  
 (Martindale-Hubbell, 2010. 4. 30)



## 美 의회, 「2010 위성방송확대 및 지역주의 법안」 승인

미국 의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전송에 관한 「2010 위성방송 확대 및 지역주의법안(STELA)」을 2010년 5월 12일 승인함. STELA는 2009년 12월 31일 만료된 「위성방송시청 확대 및 재허가법(SHVERA)」을 대체하는 개정안으로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 재전송 허가기간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필요조항을 수정·신설함

### 디지털 TV 전환에 따른 위성방송 확대 및 지역주의 법안 승인

- 미국 의회는 「2010 위성방송확대 및 지역주의 법안(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of 2010; STELA)」을 통과시켰으며 2010년 5월 12일에 대통령이 승인·서명함.
- STELA는 지역방송사의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 가구(unserved household)’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사의 채널을 재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허락권인 일괄라이선스(blanket license)를 5년간 재허가(reauthorization)하고,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관련조항을 수정·신설함.
  - 디지털 전환에 따라 STELA의 조항에서 아날로그(analog) 용어를 삭제하고 디지털 용어로 대체함.
- STELA 승인에 따라 위성방송 사업체 디시네트워크(DISH Network)社は 최초로 미국 전역의 210개 지역방송시장(Local Television Markets)에 위성으로 지역방송사의 채널을 제공하게 됨.
-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2011년 초까지 STELA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임.

## STELA의 주요내용

### □ 멀티캐스트 스트림(multicast stream)의 보호

- STELA는 네트워크 프로그램(network program)을 제공하는 멀티캐스트 채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 네트워크 프로그램(network program)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또는 일정 지역 안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며, 로컬 프로그램(local program)은 각 지방방송국이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방송하는 프로그램임.
  - 2010년 3월 31일 현재 운영되는 네트워크 멀티캐스트 채널은 2010년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의 배타적 이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원격신호(Distant Signal) 재전송 관련 조항의 효력연장

- STELA는 「2004 위성방송시청확대 및 재허가법(Satellite Home Viewer Extension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4; SHVERA)」의 조항들 중 원격신호의 재전송 조항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허가하는 동시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부가적 내용을 개정법안에 포함시킴.

### □ 위성방송사업자의 원격신호전송 확대

- ‘난시청 가구’의 정의 개정
  - SHVERA에서 ‘난시청 가구’란 일반 고정식 옥외안테나를 이용하여 선명한 지역 방송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원격 네트워크 신호를 통해 지역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반면, STELA에서 ‘난시청 가구’란 안테나의 종류에 상관없이 방송신호를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함. 즉, 기존의 ‘토끼 귀(rabbit ears)’라고 불리는 실내안테나를 이용한 수신불량도 난시청가구의 기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신환경 예측방법의 다양화
  - STELA는 시청자가 자신의 수신환경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예측기법(prediction methods)으로 기존의 ‘개별 위치 롱레이-라이스 신호 예측기법(“ILLR” signal prediction methods)’ 이외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함.

- 원격 비(非)난시청 신호(significantly viewed signals)
  - STELA는 지역방송국의 HD(High Definition) 신호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사업자 (satellite carrier)에 한정하여 원격이지만 난시청이 아닌(significantly viewed signals) HD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존에 법원은 지역방송국 사업권내의 원격신호의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디시네트웍사는 지역방송사의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사업권 제한(territorial restrictions) 위반에 대한 법정손해액 최대한도 증액

-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사업권 제한을 사적으로 위반(individual violations) 하는 경우, 법정손해액을 한 달에 5달러에서 250달러로 증액함.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사업권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법정손해액을 3개월 동안 25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증액함.

*(Pillsburylaw, 2010.5.14)*

*(S.3333 CRS Summary, 2010.5.12)*

*(Dishnetwork, 2010.5.27)*



## 美 법무부,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이행 위한 전담역할 제시

미국 법무부 장관은 2010년 6월 22일 정부의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법무부의 추진계획을 밝힘. 구체적 방안으로 '지적재산 전담반(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의 효율적 운영, 지적재산 집행력 강화, 집행자원 확충, 산업계 및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美 법무부의  
역할

- 2010년 6월 22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에릭 홀더(Eric Holder) 장관(Attorney General)은 오바마 정부의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실행의 중추기관으로써 법무부(DOJ)의 참여방안을 밝힘.
  - 구체적으로 '지적재산 전담반(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의 효율적 운영, 지적재산 집행력 강화, 집행자원 확충, 산업계 및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 미국 법무부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의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정보 공유, 효과적 조사절차 마련, 교육훈련 실행 등을 통해 연방(federal), 주(state), 지역(local) 및 국제적 집행 강화에 있어 효율성 및 조정(coordination) 능력 확보
2. 중국 등 해외 무역교역국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근절하고 국제적 집행 노력 강화
3. 미국 내 불법복제물 반입 근절과 지적재산 침해 감소를 위해 강력한 법집행 및 민간 부문(private sector)과의 공조를 통한 시장 보호

## 美 법무부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및 향후 역할이행 방안

### □ 지적재산 전담반(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 운영을 통한 공조 강화

- 올해 초 미국 법무부(DOJ)는 관계부처 및 해외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주법(state law) 및 지방법(local law)을 집행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담반(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을 창설함.
  - ‘지적재산 전담반’은 지적재산권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과 행정부의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요 부처들과 협력하게 됨.
- ‘지적재산 전담반’은 법 집행에 대한 각 부처와의 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과 더불어, 올해 9월에는 지적재산 범죄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지적재산범죄 집행지원회의(Intellectual Property Crime Enforcement Outreach Summit)’를 개최할 예정임.

### □ 지적재산 집행 자원의 확충

- 올해 4월, 미국 법무부(DOJ)는 지적재산 범죄대응과 효과적 수사 및 기소를 위해 담당업무 인력을 충원함.
  - 15명의 신임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를 임명하고, 20명의 미국연방수사국 특수요원(FBI Special Agent)을 선임함.
  - 신임 연방검사 15명은 지적재산 침해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범죄전담국(Criminal Division)’과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게 됨.
- 미국 법무부(DOJ)는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s; OJP) 및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을 통해 「지적재산 집행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약 4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적재산 보호기관에 지원할 예정임.

### □ 지적재산 집행 노력의 강화

- 미국 법무부(DOJ)는 지적재산 집행전략(IP enforcement strategy)의 일환

으로 지적재산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

- 보건과 안전(health & safety), 영업비밀 침해와 산업스파이 행위(trade secret theft and economic espionage), 대규모 위조행위(large-scale counterfeiting), 온라인 해적행위(online piracy) 등 모든 지적재산 침해에 대해 기소(prosecution) 활동을 강화함.

□ 산업계 및 국제적 협력 강화

- 미국 법무부(DOJ)는 지적재산 범죄 대응을 위해 산업계 주요인사 및 해외 법집행 파트너들과 교류를 갖고 관계를 강화함.
- 최근 미국 법무부 장관은 남미 및 스페인의 법집행기관 및 산업계 CEO 등을 만나 지적재산 범죄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논의한 바 있음.

*(Department of Justice, 2010.6.22)*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미국 '스페셜 301조'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이대희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스페셜 301조

미국 무역법 301조는 일반 301조(Original 301), 슈퍼 301조(Super 301), 스페셜 301조(Special 301)를 총칭하는데, 스페셜 301조는 해외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01조라고 하지만 여러 개의 조문으로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데, 스페셜 301조는 무역법 제181조 및 제182조로 구성되어 있다(일반 301조는 무역법 제301조 내지 제309조, 슈퍼 301조는 무역법 제310조). 스페셜 301조의 절차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무역평가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작성하여 대통령, 상원의 재무위원회, 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상표, 특허, 저작권에 상당한 장벽이 되거나 이를 왜곡하는 외국의 법, 정책 또는 관행을 지정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법 등에 의한 미국 통상의 무역왜곡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무역장벽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법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301조에 따른 조치나 해당 국가와의 협상 또는 협의를 포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무역대표부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거나 미국의 지적재산권자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허용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하고, 이러한 국가 중에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이라고 간주되는 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한 이후 30일 이내에 무역대표부는 이러한 국가의 법, 정책 또는 관행을 무역법 제301조 내지 제309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페셜 301조에 관련되는 조치도 결국 일반 301조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 301조는 무역대표부에 의한 조사, 해당 국가와의 협의,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외국의 법이나 관행 여부에 대한 결정, 보복조치, 조치 및 협정의 이행 감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스페셜 301조와 감시대상국

USTR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무역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협의 등을 진행하게 되므로 미국시장을 의지해야 하는 상

대방 교역국기는 매우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우선협상대상국 외에도 1980년대 말부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교역상대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 및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해 왔다. 이러한 대상국의 지정은 ‘우선협상대상국’과 달리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 이러한 국가로 지정된 교역상대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대표부의 강화된 노력의 대상이 되므로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1989년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2008년까지 감시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왔는데,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의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올해에도 지정되지 않았다. 2009년도의 감시대상국 지정해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201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전세계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상태에

대하여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10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이하 301조 보고서)는 한국을 이번에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0년도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며, 감시대상국으로는 그리스,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등 29개국이다.

〈표 1〉 2010년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리스트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 (Watch List)	
중국	벨라루스	볼리비아
러시아	브라질	브루나이
알제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캐나다	에콰도르	그리스
칠레	핀란드	이탈리아
인도	과테말라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레바논	노르웨이
태국	멕시코	필리핀
베네수엘라	페루	스페인
	루마니아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파라과이는 ‘306조 감시대상국(Section 306 Monitoring)’으로 분류됨

301조 보고서는 우선감시대상국 중 중국에 대하여 대부분 비효과적이고 억지력이 없는 지적재산권 집행 체제, 해적행위로 인한 손실(광학 디스크의 복제, 음악 및 영화의 복제, 소프트웨어, 서적 및 잡지에 대한 해적행위), 인터넷상에서의 해적행위의 억제 필요성, 효과적인 집행의 문제점(형사소추를 위한 엄격한 요건, 너무 낮은 액수의 행정벌금,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역시 우선감시대상국인 인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과 같은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필요성, 광학 디스크의 불법적인 생산과 복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301조 보고서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웹하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2개의 적법 웹하드의 존재와 한국정부가 일정 웹하드 운영자들을 기소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불법 콘텐츠

를 제공하는 많은 웹하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301조 보고서가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웹하드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2010년 NTE 보고서'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향상으로 인하여 한국이 감시대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한국이 지적재산을 상당히 창조하는 자의 지위로 이동하였지만, 온라인상의 해적행위,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침해행위, 대학가 서적 해적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NTE 보고서는 저작권법상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의 도입, 시정권고 규정에 따른 19,800건의 시정권고 조치(2009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적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고 차후에는 기업에서도 적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불법 DVD, CD, 소프트웨어 및 서적에 대한 강화된 단속, 불법 자료의 원천이 되는 사이트를 수사 및 기소하고 대학가 서적복제를 억제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 한국과 지적재산권

한국은 1986년에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개정한 이후, TRIPs 협정,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 등 여러 조약과 디지털환경을 반영하는 개정을 해 왔다. 또한 2007년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고 한·EU 자유무역협정도 올해에는 발효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데, 양 협정이 발효된다면 한국의 저작권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가하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가 1980년대 말 이후부터 한국을 감시대상국 내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함으로써, 최소한 현 상태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셜 301조 및 NTE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한국에서의 일정한 해적행위를 여전히 지적하고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것도 아니어서, 한미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잠복해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제1의 시장이었을 때는 물론이고 제3의 시장인 현재에서도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장인 상태에서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한미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평균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게 되고 지적재산산업은 선진국의 경제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법에 의한 보호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입김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아시아 지역 일본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 발표	32
日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물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39
日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 대책 발표	41
日 지적재산교육협회,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적재산 검정시험 도입	47
日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 음원정보처리시스템 「플루조」 구축	50
[특집]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전략	54

---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 발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10)」을 2010년 5월 21일에 발표함. 동 계획에는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창출시스템 구축, 해외 인재 발굴을 위한 환경 조성, 콘텐츠의 디지털·네트워크화 촉진, 국제 지적재산 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장전략이 제시되어 있음

### 日, 지적재산 부문 성장전략 발표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0년 5월 21일, 지적재산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과 문화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표준화를 통한 지적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콘텐츠 중심 성장, 지적재산의 산업별 강화를 위해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10)」을 발표함.

※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정부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행동계획으로, 2003년 초기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 계획」이었으나 2004년 개정 후 「지적재산추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됨.

- 동 계획은 향후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정보통신기술정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예정임.

〈표 2〉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과제별 추진전략

1	과제	국제시장에서의 원활한 시장 접근, 콘텐츠 관리 및 유통의 어려움 해결
	추진전략	국제표준화를 통한 지적재산의 효율적 관리
2	과제	일본 콘텐츠 시장의 성장 둔화, 콘텐츠 제작기반 약화, 뒤쳐진 디지털화의 문제 해결
	추진전략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추진
3	과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부족 문제 해결
	추진전략	지적재산의 산업별 강화전략 추진

- 다음은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저작권 분야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콘텐츠 강화를 통한  
성장 추진

□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창출시스템 구축(海外市場での収益創出システムの構築)

[세부목표]

- ① 연간 5편 이상 세계적 영상콘텐츠(해외매출 50억엔 이상) 배출
- ② 연간 50건 이상 해외로부터의 콘텐츠 투자(영화 공동제작 및 촬영) 유치
- ③ 아시아 시장에서 연간 1조엔의 수입 달성
- ④ 해외 콘텐츠 시장의 규제 완화

[추진전략]

- ①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유통거점 구축
  -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시스템으로써 관련펀드를 마련하고, 민간 자금이 의한 콘텐츠 제작투자 촉진을 위해 자금사용의 투명화 및 세재(稅財)상의 지원방안 검토(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아시아 시장에서의 채널 프로그램망 확보, 유통회사 활용·정보수집 및 현지기업과의 거점 정비를 통해 유통경로 확보(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②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및 콘텐츠 제작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국제적 공동제작 및 촬영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기능 강화 및 인센티브를 통한 콘텐츠 제작비 조성 등 세재(稅財)상의 지원방안 검토(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국제공동제작협정 체결(담당기관 : 외무성, 경제산업성)
  - 대규모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 관계법령상의 절차 정비 및 일반인의 이해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경찰청, 국토교통성)
- ③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 전파
  - 영화, 게임, 드라마 등과 관련된 종합이벤트를 개최하는 ‘일본 국제콘텐츠 페스티벌(Japan International Contents festival; Co-Festa)’을 활용하여 콘텐츠, 패션을 비롯한 일본문화를 종합적으로 전파하고, 해외 콘텐츠이용자를 초청하거나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을 통해 일본 콘텐츠의 수요 확대(담당기관 :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 인터넷 상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에 대한 해외송신체제 구축지원(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④ 외교강화를 통한 아시아 시장 확대

- 지상파의 일본 드라마 방송금지, 게임기 판매규제 등 해외시장에서의 콘텐츠 규제에 대한 완화 추진(담당기관 : 외무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해외 인재 발굴을 위한 환경 형성(海外人材發掘のための環境形成)

[세부목표]

- ①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지역발(地域發) 콘텐츠 제작(연간 100편)
- ② 학교수업에 각종 정보단말,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이용률 제고(1인 1대)
- ③ 콘텐츠관련 해외로부터의 유학생 확보(1만명 이상)
- ④ 콘텐츠 분야 ‘엑셀런스 센터(Center of Excellence; COE)’ 설립
- ⑤ 디지털 제작교육 관련 워크샵 참가자 확보(연간 35만명 이상)
- ⑥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크리에이터(creator) 방문기회 마련(연간 1만건 이상)

[추진전략]

- ① 콘텐츠 제작기회 창출
  -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콘텐츠의 확충(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총무성)
  - 관광콘텐츠 포함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담당기관 : 총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 공공방송기관(NHK)의 외부 영상물제작자 활용도 증대를 통해 제작기회 창출(담당기관 : 총무성)
- ② 해외로부터 일본 콘텐츠 전파를 담당할 인력을 발굴하여 세계적 인력 양성
  - 콘텐츠에 관한 인력양성과 함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대학을 지원하여 국내외

창작자나 지망자가 모이는 거점(콘텐츠 분야에서의 COE) 형성(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 세계적 수준의 창작자나 프로듀서 육성을 위해 해외파견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인력양성 지원책 실시(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 애니메이션 및 영상콘텐츠 제작공정의 고도화(제작 노하우 공유, 3D화 등)를 통한 인력양성 도모(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아시아에서 콘텐츠인력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 정비(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③ 크리에이터(creator)의 영역 확대 및 이용자 창조활동 촉진

-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워크숍을 지원하여 초·중학생 대상의 디지털콘텐츠제작 교육 추진(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 일류 크리에이터에 의한 방문교육,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창조활동 및 지적재산 관련교육 제공(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 단편영화 제작 및 영화제 지원을 통해 발표기회를 확보하고 젊은 크리에이터를 발굴(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2차적 창작(패러디 포함)이나 인터넷상의 공동창작의 권리처리규칙 명확화(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 인터넷상 콘텐츠의 부분적 인용이나 인터넷 방송 이용 등에 관해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민간관계자간의 규칙 형성 추진(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 영상 아카이브화 지원 및 대중문화 관련 아카이브의 디지털·네트워크화 도모(담당기관 : 문화과학성)
- NHK가 제작한 콘텐츠의 전략적 활용률 증대(담당기관 : 총무성)
- 민간방송국 콘텐츠와 관련하여 민간주체에 의한 콘텐츠 축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담당기관 : 총무성)

□ 콘텐츠의 디지털·네트워크화 촉진(コンテンツの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の促進)

[세부목표]

- ① 모바일방송,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등 뉴미디어에 의한 콘텐츠 시장

규모 형성(1조엔 이상)

- ② 서적, 방송프로그램의 전자매체 송신률 제고(80% 이상)
- ③ 주요 콘텐츠 플랫폼(platform)의 국제표준 획득
- ④ 콘텐츠 플랫폼 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확보
- ⑤ 일본 콘텐츠의 온라인 해외송신 비즈니스 확립을 통한 매출 확보(연간 1,000억 엔 이상)
- ⑥ 불법저작물 이용자의 비율 감소(80%)
- ⑦ 불법저작물 유통량 감소(80%)
- ⑧ 저작권 제한에 관한 일반규정, 보호기간, 보상금 제도 등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저작권 법·제도의 종합적 검토 수행

**[추진전략]**

① 콘텐츠를 위한 뉴미디어 창출

- 「콘텐츠특구(特區)」를 설치하여 특정구역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양질의 콘텐츠 창출 및 해외 콘텐츠 제작 유치를 촉진(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 뉴미디어 관련 연구, 표준화 활동 지원, 브로드밴드(broadband)화, IPTV 보급 지원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정비를 통해 뉴미디어를 위한 인프라 정비(담당기관 : 총무성)
- 디지털화에 대응한 통신·방송법 정비 및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주파수 대역의 활용을 통한 전파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2010년도 중 책정(담당기관 : 총무성)

② 콘텐츠의 전자송신 촉진

- 비상업분야에 있어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촉진 및 전자납본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상업분야에 있어 민간주도의 표준규격 책정, 권리처리규칙 및 비즈니스모델 형성 지원(담당기관 :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방송프로그램의 전자송신 촉진을 위해 영상분야의 권리처리를 일원화하고, 휴대기기에 대한 전송규칙 형성을 지원(담당기관 : 총무성)

- 영화관의 디지털화 및 3D화 지원(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 전자송신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송신에 관한 연구지원(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③ 일본 주도의 플랫폼 창출 및 플랫폼과 콘텐츠 간의 적절한 균형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 주요 플랫폼(3D영상, IPTV 등) 관련 표준화로드맵 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관련연구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비배타적 멀티플랫폼(multi-platform) 전략을 추진하고 플랫폼간의 건전한 경쟁 촉진(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마케팅 정보공유 등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쌍방에게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검토(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④ 전자송신 비즈니스의 전제가 되는 불법콘텐츠 감소 유도
-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침해발생국에 구제적 콘텐츠 침해상황을 고려한 콘텐츠 침해대책 강화를 촉구(담당기관 :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온라인 해외송신시스템 구축을 지원(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 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접근통제(access control)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제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에 대해서는 대상행위 및 대상기기 확대, 형사범 및 수입 규제조치 도입 등을 통한 규제 강화(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 콘텐츠 제공자와 권리자의 협력 하에 온라인 침해방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0년도 중에 구축하고, 콘텐츠제공자의 책임제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타진(담당기관 : 총무성)
  - 민간기업이 소비자의 편의성에 입각한 정규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촉진(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민간 차원의 저작권 침해방지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소비자 대상 계몽활동 강화(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경

제산업성, 총무성)

- 경찰에 의한 효과적 단속 실시(담당기관 : 경찰청)

⑤ 디지털·네트워크화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제도 정비

-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보호기간, 보상금제도 등)에 대해 종합검토(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 2010년 내에 저작권제하에 관한 일반규정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안을 정리하고 도입에 필요한 조치 강구(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 저작권법상 ‘간접침해’ 관련하여, 2010년에 금지청구권(差止請求權)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결론 도출(담당기관 : 문부과학성)

국제적 지적재산  
보호시스템 구축

- 권리취득과 보호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국제지적재산시스템을 구축(權利取得と保護のための低費用・高効率の國際知的財産システム構築)

[세부목표]

- ① 주요국·지역(아시아 등 신흥국가 포함)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가입국 확대
- ② 국내의 모방품·해적판으로 인한 일본기업 피해를 감소

[추진전략]

- ① 모방품·해적판대책(模倣品・海賊版対策) 추진
  - 2010년 중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교섭타결 후, 가입국 확대 및 양국간 협정을 통해 국제적 보호망 구축(담당기관 : 외무성,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침해발생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구체적 침해상황을 고려한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 추진(담당기관 :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경찰청, 총무성, 재무성)

(知的財産戦略本部, 2010.4.21)



## 日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물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일본 (사)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는 불법게임물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2010년 6월 4일 발표함. 본 조사는 이용자의 접근통제 무력화행위 실태, 불법 게임물의 이용실태, SW 제조업체의 피해액 추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닌텐도 DS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내 피해액은 2004년부터 6년간 약 9,540억엔, 해외에서의 피해액은 약 3조 8,160억엔으로 나타남

### 日 (사)컴퓨터 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물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최근 일본 내 불법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의 접근통제 무력화행위 및 비트토렌트(BitTorrent) 등의 P2P 사이트에 의한 불법다운로드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일본의 (사)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omputer Entertainment Supplier's Association; CESA)는 접근통제 무력화행위의 주체, 방법,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경대학 대학원정보학환(東京大學大学院情報學環) 산하 마바연구소(馬場研究室)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10년 6월 4일 결과를 발표함.
- 동 조사는 (주)닌텐도가 개발한 닌텐도 DS(이하, DS라 함) 및 (주)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Play Station(이하, PSP라 함) 용(用) 게임SW를 대상으로 ① 이용자의 접근통제 무력화행위 실태, ② 불법 게임SW의 이용실태, ③ SW 제조업체의 피해금액 추정을 목적으로 함.

### 불법게임물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 상기 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불법게임물의 업로드 서버는 2003년부터 증가하였으며, DS와 PSP의 발매가 시작된 2005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함.
  - ② 이들 서버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지에 광범위하게 설

치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일본과 오세아니아의 서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③ 불법다운로드를 위한 접근(access)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남미, 아프리카 포함)에서 나타나지만, 그 중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접근이 두드러짐.
- ④ 불법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에 의한 DS/PSP용 불법게임물 유통 피해액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약 2조 4000억엔(연간 약 4,000억엔) 이상으로 추정됨.
- ⑤ 일본어 버전의 DS/PSP용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약 9,540억엔(연간 약1,590억엔) 이상으로 추정됨.
- ⑥ 최근에는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같은 P2P사이트에 의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는 휴대게임기용 게임SW 이외에도 거치형(据置型) 가정용 게임기 및 PC용 게임SW도 업로드되고 있음.

#### 정품게임물 보급과 불법게임물 감소를 위한 양방향적 대책 요구

- 불법게임물의 범람현상은 게임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품게임물 보급 및 불법게임물 감소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게임개발회사나 발매회사는 불법복제 게임SW가 ‘마지콘(マジコン)’ 등으로 플레이 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 정품의 유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함.
  - ※ ‘마지콘(マジコン)’은 불법 게임SW를 닌텐도 DS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변환해주는 장치임.
- 행정적 차원에서는 해외에서의 불법게임물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정책화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함.

(社団法人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 2010.6.4)



## 日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 대책 발표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知的財産戦略本部コンテンツ強化専門調査会) 산하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콘텐츠대책에 관한 워킹그룹(インター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のコンテンツ対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접근통제 무력화 규제 방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소재, 리치사이트(rich site)에 의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상습침해 대책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2010년 5월 18일 발표함

### 온라인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를 위해 법적 보호방안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등 민간차원의 대책, 정품유통촉진, 소비자 계몽활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대책이 필요함.
- 이에,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知的財産戦略本部コンテンツ強化専門調査会)의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콘텐츠대책에 관한 워킹그룹(インター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のコンテンツ対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은 법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논점을 검토·정리함.
  -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2010년 5월 21일에 발표된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반영됨.

### 접근통제(access control) 무력화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

#### ① 접근통제 무력화기기 규제 방안

##### □ 문제의 배경

- 2003년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개정을 통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기기에 대한 규제범위가 설정되었으나, 무력화기기의 남용으로 콘텐츠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상의 콘텐츠유통이 일

반화되면서 접근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 접근통제란 로그인, 회원가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 대상행위의 확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접근통제 무력화기기·프로그램(이하 ‘무력화기기 등’이라 함)을 양도, 인도 등의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 송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무력화기기 등의 ‘제조’ 및 ‘무력화 서비스 제공’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제조’에 있어서는, 제조업체의 기기제조나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규제범위(예 : 양도 등의 목적에 한정)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규제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대상기기의 확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접근통제를 무력화함으로써 시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장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복제통제(copy control)에 대해 무력화‘만’을 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 복제통제란 디지털 저작물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여 복제를 방지하는 방식임.
- 그러나, 이러한 ‘만’이라는 제한적 요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기능을 부가하여 판매하거나, 무력화기능 미장착기기 구매 후 인터넷에서 무력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무력화기기로서 이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권리자 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의 ‘만’이라는 요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기규제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면, ‘주된 목적’, ‘무력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기능을 가진 기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② 접근통제 무력화행위 규제 방안

### □ 문제의 배경

- 최근 무력화기기 등의 범람으로 인해 개인에 의한 접근통제 무력화행위가 만연함. 또한 콘텐츠의 인터넷송신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복제통제(copy control)가 아닌 접근통제(access control)만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례가 증가함.

### □ 무력화행위 규제범위

- 현행법 하에서는 무력화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음.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접근통제를 규제대상으로 할 수 없었음.
- 복제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 접근통제의 무력화행위, ‘마지콘(マジコン)’을 이용한 접근통제 무력화 행위, 시청기간의 설정 등 인터넷 송신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접근통제 무력화행위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 □ 적용예외 규정

-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용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다음의 행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암호화 연구 및 정보해석 등의 연구개발
  - 보수 및 수리
  - 장애인 이용
  -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 사법·행정적 목적 등

### □ 침해대책 조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불법콘텐츠 유통 만연으로 인해 개별 안건별로 통지·삭제하는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

통해 불법콘텐츠의 유통량을 감소시켜야 함.

- 권리자측은 ‘개별 건의 감시’나 ‘삭제요청’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측은 ‘침해행위자에 대한 경고메일 송부’, ‘반복침해자나 악질침해자에 대한 서비스중지규칙 정비·운용’,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불법콘텐츠 모니터링’ 등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권리자가 협동하여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침해대책조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의 운용에 있어서 관계자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유형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행동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삭제절차

- 현재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운용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권리자간의 삭제절차가 대략적으로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개별적 요청에 의한 삭제에는 한계가 있음.
- 국제적 투명성 제고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법률상 삭제절차 명확화에 대해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삭제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영문판 공개도 투명성 제고의 일환임.

#### □ 발신자정보 공개

- 재판 외 특정상황에서의 발신자정보 공개 촉진을 위해 공개실적이나 판례를 고려하여 공개기준(IP주소 등)을 명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함.
- 경고에 대해서는 메일주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권리자로부터의 메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전송함으로써 대응 가능하므로, 경고메일의 전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적법하게 경고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반복적인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일명 ‘저작권 삼진아웃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아직 입법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리치사이트(rich site)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검토

□ 문제의 배경

-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중 직접 불법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지만 링크를 통해 불법사이트 혹은 불법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콘텐츠의 열람이나 다운로드 행위를 조장하고 있음.
- ※ 리치사이트(rich site)란 저작권침해 콘텐츠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들 링크를 한곳에 모아 게재하는 사이트를 말함.

□ 해결 대책

- 이들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a) 해당 사이트의 성격이 불법콘텐츠 사이트로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b)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불법사이트 혹은 파일에 대한 링크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을 요건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저작권침해의 ‘공동불법행위(방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재 검토 중인 저작권의 간접침해 요건 등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문제의 배경

- 인터넷 상에서 P2P를 통해 콘텐츠가 불법유통된 경우 어느 정도 규모로 제3자에게 다운로드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업로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불법업로더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 인터넷 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검토

### □ 해결 대책

- 원고의 입증책임부담(原告立証負擔)을 경감하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 손해배상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정액배상(定額賠償)을 선택하는 제도가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불법콘텐츠의 확산정도나 판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된 평균수치를 청구액의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결하도록 함.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 문제의 배경

- P2P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 일련의 경고절차 후 인터넷 액세스를 제한하는 제도가 유럽 등에서 논의되고 있음.

### □ 해결 대책

- 한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위 ‘삼진아웃제도’는 파일공유SW를 통한 침해에는 유효하나 실효성 확보 및 자유/제약의 형평(自由の制約との衡平)이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으며 현행 제도상 경찰단속에 의한 효과, 다른 국가에서의 실시상황 및 효과 등도 고려하여 향후 검토를 진행해야 함.
- 일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이용자와의 계약약관에서 침해행위자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체방안은 그 허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허용범위 및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知的財産戦略本部 コンテンツ強化専門調査会, 2010.5.18)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 日 지적재산교육협회,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적재산 검정시험 도입

일본 지적재산교육협회는 영화·음악·정보서비스 등의 콘텐츠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 실시예정인 제7회 국가시험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에 「1급 콘텐츠전문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지적재산 지식을 보유한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인력(コンテンツビジネス専門人力)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2010년 4월 21일 발표함

日, 지적재산 지식을 보유한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제기

- 일본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유통시키고 있으나,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간의 콘텐츠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를 상대로 일본의 콘텐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지적재산 지식을 보유한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인력(コンテンツビジネス専門人力)’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지적재산교육협회(知的財産教育協会)’는 TV방송국, 음악·영상·게임SW 제작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출판사 등 콘텐츠분야의 주요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

1. 콘텐츠분야에 있어서 권리처리 능력은 사업관리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 그러한 계약법무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음. 이는 콘텐츠 비즈니스 종사인력의 업무능력 향상 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본 콘텐츠산업의 정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사고와 자금조달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콘텐츠 활용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함. 이러한 인력의 부족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3. 인터넷 비즈니스나 외국 저작권법 및 관례 등에 정통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듀서(producer)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능력을 평가할만한 검정시험이 없음.

※ 지적재산교육협회는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취지에 따라,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검정제도를 통해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02년 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임.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검정 실시

- 지적재산교육협회는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 11월에 실시예정인 제7회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知的財産管理技能検定)」에 「1급 - 콘텐츠전문업무(1級 - コンテンツ専門業務)」를 새로이 추가하여, 영화, 음악, 정보서비스 등의 콘텐츠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검증한다는 인력양성 계획을 2010년 4월 21일 발표함.
-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은 지적재산(발명, 상표, 저작권 등)의 창조·보호(권리화)·활용에 관한 지식 및 실무적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임. 2008년 7월에 실시된 제1회 검정부터 제5회 검정(2009년 11월 실시)까지의 응시자는 약 55,000명임.

〈표 3〉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 분류

자격	등급	구분	응시대상	자격증 보유자 (2010년1월 기준)
지 적 재 산 관 리 기 능 사	1급	특히 전문업무	기업 등에서 특허에 관한 전략, 법무, 위험관리, 정보·조사, 국내권리화, 해외권리화, 계약, 권리행사, 가치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업무상 과제해결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	1,020명
		콘텐츠 전문업무	지적재산분야 중 특히 콘텐츠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로서 콘텐츠 프로듀서, 계약법무 매니저 등	-
	2급	관리업무	지적재산분야(전반(저작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서 디렉터, 계약법무 담당자, 크리에이터, 에디터 등	9,281명
	3급	관리업무	지적재산분야에 대하여 초보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서 향후 콘텐츠 비즈니스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종사하기 시작한 자(어시스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턴트 등)	11,401명

- 동 검정시험을 통해 응시자는 콘텐츠 비즈니스업계에서 지식 및 기술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력 유입과 직원의 능력향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콘텐츠 비즈니스의 소극적인 위험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비즈니스 추진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콘텐츠 유통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동 시험은 이와 관련된 마케팅, 자금조달, 미국 저작권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지적재산 법무능력을  
갖춘 콘텐츠 전문가  
양성

- 기존 콘텐츠 업계에서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부와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무 부문의 분업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인력’은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 - 1급 콘텐츠전문업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측정할 예정이며 ‘콘텐츠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해당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사업부문의 콘텐츠 프로듀서나 법무부문의 계약업무 매니저 등으로, 이외의 콘텐츠 업계 종사자는 3급, 2급 자격증 취득을 거쳐 1급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표 4〉 「1급 - 콘텐츠전문업무」 검정내용

학과시험	실기시험
1. 위험관리 2. 계약 3. 권리행사 4. 자금조달 5. 가치평가 6. 관계법규 7. 콘텐츠전문업무 (1) 콘텐츠개발전략 (2) 콘텐츠창조지원 (3) 콘텐츠보호 (4) 콘텐츠관계법규	1. 콘텐츠전문업무 (1) 콘텐츠개발전략 (2) 위험관리 (3) 콘텐츠창조지원 (4) 콘텐츠보호 (5) 계약 (6) 권리행사 (7) 자금조달 (8) 가치평가

※ 해당 시험은 2010년 11월 14일 최초 시행될 예정임.

(知的財産教育協會, 2010.4.21)



## 日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 음원정보처리시스템 「플루조」 구축

일본 (사)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CDC)는 2010년 4월 1일부터 「플루조(Fluzo)」 서비스를 개시함. 동 서비스는 복수 저작권관리사업자의 권리관리정보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핑거프린트(finger print) 기술을 이용한 음원검색과 데이터 일괄처리 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일본 음악송신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日 음악 서비스 사업자·권리자, 공동 저작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일본 음악콘텐츠 시장은 모바일 중심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휴대전화용 음악콘텐츠 시장은 매출액 1,545억엔에 총 다운로드 7.8억회, 음악콘텐츠 사이트는 8,200개에 달함.
- 인터넷 점포의 경우 재고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에 대량의 물품을 쌓아두는 롱테일 비즈니스가 일반적이지만, 저작권 처리는 대량으로 판매되는 음원이든 1곡만 판매되는 음원이든 간에 소요비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 대량의 음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음악콘텐츠 사업에서는 저작권정보 처리작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음악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콘텐츠 유통에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 기존 저작권정보 처리방식의 한계

- ① 음악저작권 관리사업자는 복수로 존재하지만, 각 사업자가 관리하는 음원의 작품정보에 대한 종합 검색시스템의 부재로 관리사업자의 작품정보(작품코드)를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함
- ② 동일 음악콘텐츠라도 관리사업자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함
- ③ 저작권 관리사업자가 공개하고 있는 작품정보는 음원명이나 아티스트명 등 키워드 바탕의 텍스트 베이스로 검색해야 하며, 음원명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시간이 많이 소요됨
- ④ 음원을 송신하는 시점과 저작권관리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등록시점 간의 간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재검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2009년 3월, 일본의 음악콘텐츠사업자 단체인 넷트워

크음악저작권협의회(Network Music Rights Conference; NMRC)와 권리자 단체가 사단법인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Copyright Data Clearinghouse; CDC)를 공동설립함.

- 동 기구는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2010년 3월 음악콘텐츠사업자가 저작권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음원이용 보고데이터’의 관리시스템인「플루조(Fluzo)」를 개발함.
- 「플루조(Fluzo)」시스템은 2010년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현재 (사)음악저작권협회, e-License, Inc., Japan Rights Clearance, Inc., (주)다이키사운드 4개 저작권관리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50개 가량의 음악콘텐츠사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플루조(Fluzo)」  
시스템의 개요 및  
도입효과

□ 「플루조(Fluzo)」시스템의 운용체계

① 집약된 저작권관리사업자의 권리정보

- 저작권관리사업자가 개별관리하는 음원정보를 「플루조(Fluzo)」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약시킴으로써 음악송신사업자는 「플루조(Fluzo)」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 것만으로 저작권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모든 음원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② 음원코드(CDC-ID)에 의한 일원관리

- 음악송신사업자는 「플루조(Fluzo)」에 음원별로 부여된 음원코드(CDC-ID)를 취득함으로써 각각의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음원별로 부여한 작품코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없어짐.
- 음원코드(CDC-ID)와 각 관리사업자의 작품코드 연계작업은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CDC)가 일괄 실행하고 있으며, 음원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음원코드(CDC-ID)의 변경작업을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CDC)가 담당하게 되므로 송신사업자는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짐.

③ 핑거프린트(finger print)를 이용한 간편검색

- 이전에는 음원명이나 아티스트명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했으나, 「플루조(Fluzo)」는 음악 자체추출 데이터인 핑거프린트(Finger Print; FP)를 이용함. 이로 인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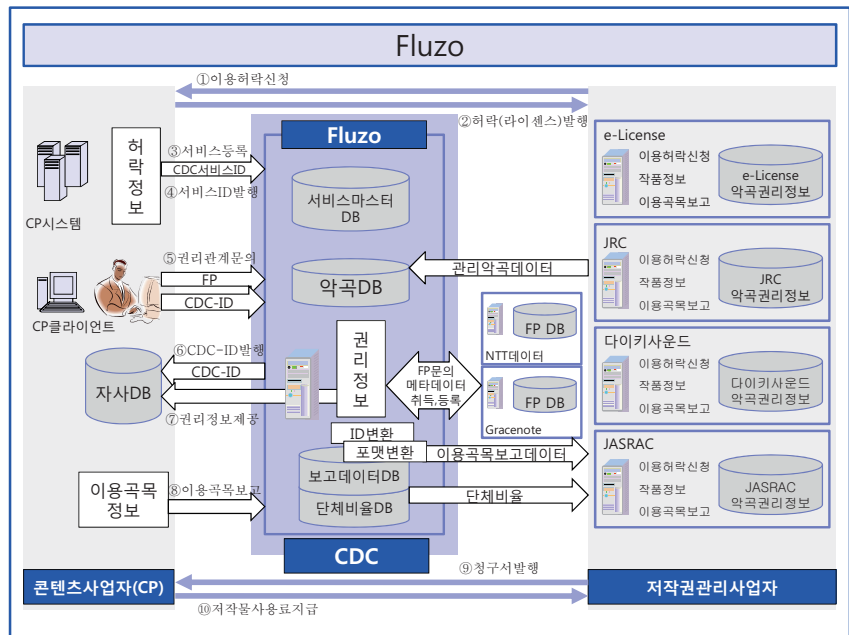
색효율의 비약적 향상이 예상된다.

- 「플루조(Fluzo)」시스템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주)NTT데이터社와 그레이스노트(Gracenote Inc.)社의 핑거프린트 기술이 적용됨.

④ 음원코드(CDC-ID) 즉시발행에 의한 일회적 검색 가능

- 저작권관리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음원이라 하더라도 송신사업자가 「플루조(Fluzo)」에 문의한 시점에 즉시 음원코드(CDC-ID) 발급 후 검색이 가능함.
- 새로이 발급한 음원코드(CDC-ID)와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작품코드를 상호연관시키는 작업은 사후적으로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CDC)가 일괄 처리함. 핑거프린트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된 음원이라 하더라도 송신사업자가 가진 음원 및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등록 후 음원코드(CDC-ID) 발행이 가능함.

〈그림 1〉 플루조 시스템의 운영체계



※ 출처 : (사)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2010)

□ 「플루조(Fluzo)」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

① 음악콘텐츠사업자 측면

- 핑거프린트 검색을 통한 음원코드(CDC-ID) 관리의 효율화로 저작권 처리과정이 간편화
- 초보자나 미경험자도 작품검색 가능
- 음원코드(CDC-ID)의 즉시발행(일회적 검색)에 따른 업무절차 효율화 및 작업량 감소
- 권리정보의 집약·일원화로 인한 미허락송신(未許諾送信)의 리스크 감소

② 저작권관리사업자 측면

- 각 저작권관리사업자별 관리음원정보의 일원화를 통한 오류보고 및 미허락송신 방지
- 핑거프린트 검색에 의한 음원정보(권리정보) 관리의 효율화, 관리사업자 작품코드 확인작업의 단순화
  - 음악송신사업자의 보고지연 및 관리자작업코드의 설정오류 방지로 인한 사무처리 효율 향상

③ 음악콘텐츠사업 전반적 측면

- 「플루조(Fluzo)」 가동으로 인해 음악콘텐츠사업자의 저작권처리 부하가 경감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다양한 상품등록이 가능
  - 저작권처리 경비 절감으로 인한 수익개선
  - 신규시장 진입 용이
- 기존에 각 음악콘텐츠사업자 및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중복 수행해 온 작업을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CDC)’가 일괄처리함으로써 전체적 작업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著作権情報集中処理機構, 2010.3.3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전략

손승우 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과

### ‘지적재산추진 계획’의 개요 및 의미

일본은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장 기불황을 타개하고 전통적인 사업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식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술혁신, 콘텐츠, 브랜드를 핵심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이들 요소를 촉진하기 위해 지적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그 결과물을 적절히 보호하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혁신을 추진하였다.

2002년 2월 고이즈미 총리대신은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7월에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 및 인재양성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50여개의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전략 대강’을 마련함으로써 ‘지적재산 입국’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3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03년부터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중 저작권 보호전략은 ‘보호 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모방품·불법복제판에 대한 국내외 대책 강화, 손해배상 및 형벌의 강화 검토, 분쟁처리기능 강화, 저작권제도의 국제적인 조화 및 보호 추진 등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재양성 및 활용 분야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법복제판의 단속 강화, 콘텐츠 유통시스템의 정비, 권리자에 대한 이익 환원에 관한 기반 정비, 기술적보호수단의 법적대상 확대, 초중등 학생 및 교원 등에 대한 저작권 교육 확대 등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영화, 게임 등 콘텐츠 분야의 사업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전략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전략과 연계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지적재산전략본부는 ①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 및 문화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② 콘텐츠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성장전략 추진, ③ 지적재산의 산업별 강화 등 3가지 중점 전략을 포함한 「2010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03년 이후  
'지적재산추진  
계획'상 저작권  
보호 전략의 변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상의 저작권 보호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조·불법복제판에 대한 국내의 대책이 추진계획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하면서 해외에서 증가되고 있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자관 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 공조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이래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관한 대책을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2010년 추진계획에서는 ACTA의 타결을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주요 개도국과 신흥아시아 지역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추진계획 이전에는 유럽 및 미국 중심의 연계를 통한 불법복제 방지공조를 강화하였지만 동년부터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이 점차로 활성화되면서 모방품·불법복제판에 대한 경찰 및 세관단속 중심에서 2004년 이후 P2P, 인터넷 등 네트워크 단속, 2010년 모바일 불법복제 규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2007년에는 인터넷 경매에서의 불법복제물 거래 방지, 모방품·불법복제판의 개인수입·개인소지의 금지, 보세지역에 대한 세관단속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7년 제정된 「영화의 도촬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이 시행되었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진행되었다.

한편, '지적재산추진계획'에는 저작권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일시적 복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사적복제의 범위, 간접침해의 명확화, 법정손해배상, 사적녹음·녹화 보상금제도 등과 관련된 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09년에는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이용(fair-use)'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에 관한 과제도 제안되었다. 특히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규제대상의 확대 문제는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형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행위 금지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8년 추진계획부터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의 콘텐츠 규제완화 노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교육 및 계몽, 관민·민민의 연계 강화, 정부내의 연계 체제 정비, 민간기업의 체제강화, 분쟁처리기능 강화 등 추진과제는 2003년이래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0 지적재산  
추진계획'상의  
저작권 보호전략  
포인트**

'2010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핵심전략 중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은 저작권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콘텐츠 저작권 보호전략은 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촉진'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모바일방송,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IPTV,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미디어 및 플랫폼 콘텐츠 시장(1조엔

목표)과 인터넷을 통한 일본 콘텐츠의 해외 사업 확대(매출 1,000억엔 목표)를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래의 저작권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진흥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 1 ACTA 타결과 신흥국의 참여 확대

일본정부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교섭을 2010년 중에 타결하고, 그 이후에는 주요 개도국과 신흥아시아 지역 국가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2006-2007년에 개최된 ACTA 사전협약에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스위스가 참가하였고, 2008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였음

또한, 일본은 양자협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망을 확대하고, 양자관계에서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침해발생국 및 지역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 상황을 고려한 저작권침해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2 저작권 침해 감소 목표치 설정

2010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저작권 침해 감소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일정기간 내에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한 경험에 있는 사람의 비율 80% 감소
- ② 정점관측(定點觀測)에 의한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량 80% 감소
- ③ 국내외 모방·해적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모방피해율을 25%에서 12%로 감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경찰에 의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민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접근통제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일본정부는 방송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네트워크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적용된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자 한다. 다만 신설되는 접근통제 규제가 제품 개발이나 연구개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예외규정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부과학성은 접근통제 무력화와 관련하여 대상행위의 확대, 대상기기의 확대, 형사처벌 및 수입규제 도입 등을 통하여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4 저작권관련 법제도 개선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작권 제한규정, 보호기간, 보상금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중에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프로바이더(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검토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 5 저작권 침해방지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등

정부는 민간차원의 저작권침해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와 권리자가 협력하여 인터넷상의 침해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0년도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감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정류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국내 저작권 보호에의 시사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 ‘지적재산 입국’을 선택했듯이, 2000년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범정부적 ‘지적재산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지적재산 우선화법(PRO-IP)」을 제정하고 지적재산정책집행청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Enforcement; NPILECC)을 대통령 소속의 지적재산 집행조정관으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을 관리·조정하도록 하였다. EU는 회원국간의 통합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EU 이사회내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EU 공동체 지적재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5년 ‘지적재산을 통한 소강사회(백성이 편하고 배부르게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제정 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을 범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기본계획(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창출된 지식재

산을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전략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는 국내와 국외 전략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스마트폰 등장, Web 3.0, 오픈소스 SW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한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불법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외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아시아 지역 등과의 공조,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등 ‘침해대응 원스톱 서비스’ 설치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을 주도하면서 주요 개도국과 신흥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기구, 양자관계를 통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인 개선과 저작권침해방지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은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의 진흥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침해경험자, 침해물 유통량, 모방피해율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아시아 지역 중국

---

中, 지재권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추진	60
中 3개 저작권 단체,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규정 발표	63
中 상하이 법원, 자국 대기업에 대한 SW 저작권 침해소송에 MS社 승소 판결	65
中,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위한 「2010 그린북마크 캠페인」 개최	67

---



## 中, 지재권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추진

중국정부는 2010년 3월 26일 발표한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2010年中國保護知識產權行動計劃)」 실행의 일환으로 집행역량 강화, 행정체계 개선, 박람회 지원, 저작권 관련기관·개인간 협력체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함. 「2010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은 법제 개선, 법집행 강화, 관계기관간 협력 추진, 홍보 강화, 규범 관리의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10개 범주 총 164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中, 「2010 중국지적 재산권보호 행동 계획(年中國保護知識產權行動計劃)」 발표

-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요강(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 발표 이후, 매년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年國家知識產權戰略實施推進計劃)」과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年中國保護知識產權行動計劃)」을 수립하고 있음.
- 2010년 3월 26일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 성장환경 조성 및 창조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법제 개선, 법집행 강화, 관계기관간 협력 추진, 홍보 강화, 규범 관리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사법보호, 국제교류협력,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교육 등 10개 범주 164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중국정부는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임.

「2010 중국지적 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5대 목표

- ①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 개선, 법체계 형성 및 법규 운용성 강화
- ② 법집행의 효율성과 강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 강화
- ③ 사회적 영향,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 법집행 환경 등을 고려한 시장환경 개선
- ④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의 통일화 및 부서간 원활한 협력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⑤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대외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홍보하고 국민의 보호 의식 제고

□ 세부 추진내용

- ① 홍콩·마카오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② 디지털 방송·영상 저작물의 보호체계 확립
- ③ 저작권 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강화
  - 부성급(副省级) 이하 도시의 저작권 행정 집행의 주체, 직능, 책임의 명확화
- ④ ‘상하이 세계박람회(上海世博会)’, ‘광저우 수출상품 교역회(广州出口商品交易会)’ 등 대형 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한 불법복제물 단속 지원
- ⑤ 저작권 보호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및 불법복제물 단속체계 개선
  - 2009년 저작권침해 수사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
- ⑥ 홍콩 세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 ⑦ 저작권 행정기관 및 형사기관의 연결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범죄 단속능력 강화
  - 행정기관과 형사기관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网上衔接, 信息共享)’ 체계 마련
  - 법집행 관련 조직적 협력체계 수립
- ⑧ 국내의 권리자 및 권리단체 간 소통체계 개선

□ 기타 저작권 관련 내용

- 온라인 관리감독 체계(platform)를 마련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함.

- 온라인 불법저작물, 기업기밀 유출, 위조 및 부정경쟁 행위의 단속·수사
- 저작물의 생산·유통·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온라인 저작물의 사법보호와 음악·영상물 침해사건 등의 법적기준을 명확히 함.
- 지적재산권 인재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인력 및 프로그램을 확충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2010.4.12)



## 中 3개 저작권 단체,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규정 발표

중국인터넷협회(中國互聯網協會)와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國電影著作權協會), 중국방송협회(中國廣播電視協會)는 「인터넷 영상저작권 합작 및 보호규정(互聯網影視版權合作及保護規則)」을 2010년 4월 26일 공동발표함. 3개 단체는 상호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영상물의 저작권 권한부여 및 보호상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부당 교역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中 온라인 영상 저작물 관련 3개 단체, 「인터넷 영상 저작권 합작 및 보호규정(互聯網影視版權合作及保護規則)」 발표

3개 단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영상저작물 보호체계 마련

- 2010년 4월 26일,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国电影著作权协会), 중국방송협회(中国广播电视协会)는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 및 공정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 「인터넷 영상저작권 합작 및 보호규정(互联网影視版權合作及保護規則)」을 공동발표 함.
  - 동 규정은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 및 국가관권국(国家版权局)의 인가를 받음.
- 중국인터넷협회 인터넷저작권업무위원회(中国互联网协会网络版权工作委员会),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国电影著作权协会), 중국방송협회 방송제작위원회(中国广播电视协会电视制片委员会)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협조를 강화하고 「저작권인공고연락인제도(版权公告联络人制度)」를 마련하여 저작권 권한부여 및 보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정리함.
  - 3개 단체의 상호협조 하에 중국인터넷협회 인터넷저작권업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영상물의 저작권 정보를 발표함.
- 「인터넷 영상저작권 합작 및 보호규정」은 영상물 제작 비즈니스의 규범화를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의 인터넷 유통을 촉진하고,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이나 중복·허위적 권한 부여 등의 부당한 교역 행위를 방지함.

## 인터넷 방송업체에 대한 규제

- 동 규정의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협회 내부에 통보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며, 영상물 주관 정부기관에 보고하게 됨.
- 인터넷 방송업체는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 등 3개 단체가 발표하는 저작권 정보에 의해 권한부여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영상물을 방송할 수 없으며, 인터넷 이용자가 이러한 작품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함.
- 불법영상물의 경우 즉시 차단해야 하며 불법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3개 협회의 저작권 정보 발표를 통해 확인 후 차단 처리를 하게 됨.
- 인터넷 방송업체는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streaming) 위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운로드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방송영상물의 불법유출을 막아야 함.

(国家版权局, 2010. 4. 28)



## 中 상하이 법원, 자국 대기업에 대한 SW 저작권 침해소송에 MS社 승소 판결

MS社는 2010년 4월 22일, 자사 SW를 불법 이용한 중국 국유기업 대중보험공사(Dazhong Insurance)와의 소송에서 승소함. 이번 사건은 MS社가 중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 중 중국법원이 MS社의 손을 들어준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국 대중보험공사, MS社와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패소

- 중국 상하이(上海)의 국유기업인 대중보험공사(大眾保險公司, Dazhong Insurance)는 윈도우 XP(Windows XP), MS 오피스(MS Office) 등 MS社의 9가지 SW를 450개 이상 불법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됨.
- 2010년 4월 22일, 상하이 법원은 MS社의 SW를 불법 이용한 대중보험공사가 MS社에게 약 3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이번 판결은 중국 내에서 MS社가 중국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 중 승소한 최초의 사건임.
- 한편, 대중보험공사는 이번 SW 불법이용에 대한 과도한 배상판결은 MS社의 독점적 지위(monopoly status)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항소하겠다고 밝힘.

### 중국의 불법복제로 인한 SW업체들의 피해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SW 불법복제율은 약 80%이며, SW업체들이 불법복제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66억 7,000만 달러에 달함.
- 중국의 SW 불법복제율은 2004년 약 90%에서 2008년 약 80%로 하락세에 있지만 여전히 불법 SW가 중국내 가정 및 직장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MS社를 비롯한 수많은 SW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기에 대책마련이 요구됨.

※ 참조

<http://www.networkworld.com/news/2010/042310-microsoft-wins-piracy-case-against.html>, 2010.4.23

<http://www.mis-asia.com/news/articles/microsoft-wins-piracy-case-against-chinese-company>, 2010.4.23

<http://www.devicemag.com/2010/04/23/microsoft-wins-court-case-for-piracy-against-chinese-insurance-company>, 2010.4.23

[http://beforeitsnews.com/story/44/407/Microsoft\\_s\\_Piracy\\_Lawsuit\\_Against\\_Chinese\\_Internet\\_Caf\\_Postponed.html](http://beforeitsnews.com/story/44/407/Microsoft_s_Piracy_Lawsuit_Against_Chinese_Internet_Caf_Postponed.html), 2010.5.15



## 中,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위한 「2010 그린북마크 캠페인」 개최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와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및 중국의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기관(全國“打黃打非”辦公室)들은 2010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10 그린북마크 캠페인(綠書簽行動)」을 개최함. 동 캠페인에서는 출판물 포함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그린북마크(Green Bookmark)’ 발급, 불법복제물 폐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짐.

### 中, 「2010 그린 북마크 캠페인 (綠書簽行動)」 개최

- 중국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CCTV(央視網; 중국 공영채널중앙방송) 및 중국의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기관(全國“打黃打非”辦公室)들은 2010년 4월 12일 베이징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출판물 포함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2010 그린북마크 캠페인」을 전개함.

- 2010년 4월 30일까지 열린 제3회「그린북마크 캠페인」은 매년 4월 26일 ‘세계지적 재산권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그린북마크(Green Bookmark)’ 발급, 불법복제물 폐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대중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짐.

※ 그린북마크는 ‘생명력 있고, 순수하고, 희망이 충만한 녹색문화 환경’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물 퇴치를 위한 그린북마크 캠페인은 중국 전국의 정부기관, 학교,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행사내용 및 성과

- 이들 기관은 「그린북마크 캠페인」을 통해 각 100여 곳의 인터넷 사이트, 출판사, 영화관, 초·중·고등학교와 1,000여개의 서점 및 레코드 가게에 그린 북마크를 배포하였으며, 3억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함.
- CCTV(央視網), 신화사(新華網), 인민일보(人民網), 시나닷컴(新浪網) 등 주요 사이트에서는 캠페인을 위한 특별 코너를 개설하여 1주일 동안 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을 확보함.

-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당당닷컴(當當網)은 60만권 이상의 판매서적에 그린북마크를 홍보함.
- 또한, ‘청두도서박람회’, ‘상하이 엑스포(上海世博)’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불법복제 반대, Me First(拒绝盗版 从我做起)’ 서명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활동을 펼침.
  - 불법복제 반대, Me First' 서명운동은 대중의 창의성 제고와 정품 이용촉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시나닷컴(新浪), 유쿠닷컴(优酷), 투더우닷컴(土豆) 등 18개 사이트와 베이징TV아트센터(北京電視藝術中心), 차이나Film&TV(中視影視製作有限公司) 등 24개 기관도 서명활동에 동참함.
- CCTV(央視網)는 「2010 그린북마크 캠페인」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송하였으며, 반(反)불법복제물 홍보대사인 중국배우 성룡(成龍)이 홍보활동에 동참함.
  - 한편, ‘360안전센터(360安全中心)’는 CCTV와 공동으로 정품 SW 이용권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함과 동시에 무료 백신 및 잔류 SW 삭제서비스를 제공함.

(国家知识产权局, 2010.5.1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유럽

---

獨 연방최고법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예방의무 일부 인정	72
獨 음악저작권협회, 월드컵송 중계 저작권료 징수	74
英,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한 「2010 디지털 경제법」 발효	76
英 위긴(Wiggin)社, 2010년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	82
英 오프콤(OFCOM), 「2010 디지털 경제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초안 발표	87
스페인 지적재산관리협회(SAGE), 공CD 제조업체에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89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회원국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제시	91
유럽 16개 저작권 관련 단체, 유럽연합(EU) 차원 저작권 예외규정 마련 위한 공동선언	94
유럽의회 녹색당, 저작권자 보상 및 문화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97

---



## 獨 연방최고법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예방의무 일부 인정

독일 연방최고법원(BGH)은 저작권자인 작곡가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제3자가 해당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네트워크 소유자는 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2010년 5월 12일 판시함

###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 독일 작곡가 모세스 펠함(Moses Pelham)은 암호화하지 않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Unterlassungsanspruch)’,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Schadenersatzanspruch)’ 및 ‘기타법률비용청구(Abmahnkosten)’ 소송을 제기함.
- 작곡가는 자신의 노래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공유사이트(Tauschbörse)에 업로드 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는 저작권이 침해될 당시 휴가 중이었기에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침해를 허용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함.
- 2010년 5월 12일 연방최고법원(Der Bundesgerichtshof; BGH)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1심 법원(Landgericht)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Berufungsgericht)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 연방최고법원(BGH)의 판결과 시사점

-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자(Täter)’는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방해자(Störer)’에 해당함.
  -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를 도우려는 고의성이 없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범(Gehilfe)도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저작권침해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는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를 암호화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암호화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를 처음 설치할 때에 설정하는 암호 정도는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
- 이에, 연방최고법원(BGH)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통해 무선인터넷 소유자에게 공지를 보내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Abmahnkosten; 우리나라의 내용증명에 해당)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1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함.

*(Der Bundesgerichtshof(BGH), 2010.5.12)*



## 獨 음악저작권협회, 월드컵송 중계 저작권료 징수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월드컵 중계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경기를 중계하는 경우, 월드컵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월드컵 중계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중계하는 경우 특별 할인요율이 적용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함

### 獨 음악저작권협회, 월드컵송 중계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

- 2010년 5월 21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서비스업체가 월드컵 축구중계를 목적으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중계기기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함.
- 음식점이나 주점 등이 축구경기 중계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을 위하여 텔레비전이나 빈프로젝트 화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非행사용(ohne Veranstaltungscharakter) 중계로 추정됨.
- 「'54, '74, '90, 2010」 등의 월드컵송(viele andere Fußballhits)이 사용된 월드컵 경기방송을 중계하는 경우, FIFA의 라이선스를 얻었어도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사전취득해야 함.

※ 독일은 월드컵에서 1954년, 1974년, 1990년에 우승하였으며, 독일의 유명 밴드 '스포르트프로인데 스틸러(Sportfreunde Stiller)'가 2006년 월드컵 경기에서도 우승하자는 의미에서 「'54, '74, '90, 2006」을 작곡하여 크게 히트함. 이후 2010년 월드컵 경기를 맞이하여 「'54, '74, '90, 2010」이 발표됨.

### 非행사용(ohne Veranstaltungscharakter) 중계, 특별 할인을 적용

- GEMA는 행사용(mit Veranstaltungscharakter) 중계와 행사의 성격을 갖지 않은 非행사용(ohne Veranstaltungscharakter) 중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차등 요금을 적용함.
- 非행사용 중계의 경우, GEMA가 정한 특별 할인요금(Sondertarif)이 적용되나, 행사용 중계의 경우에는 일반 요금이 부과됨.

행사용(mit Veranstaltungscharakter) 중계, 일반요금 적용

- 非행사용 중계에 해당하는 서비스 업체는 설치된 중계기기마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특별 할인요금이 적용되어 중계기기당 25.01유로(약 40,000원)를 지불해야 함.
- 행사용 중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영리업체가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며, 입장료를 받거나 입장료 이외의 부대비용을 징수함.
  - 축구경기가 중계되는 도중에 행사주최자가 설치한 편의점(Imbissstätte)에서 음료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 이러한 행사용 중계는 일반적인 영업범주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축구경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까지 음악이 방송되는 행사는 개별적으로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저작권료는 중계 장소의 범위와 입장료의 금액에 따라 책정됨.

(GEMA, 2010.5.21)



## 英,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한 「2010 디지털 경제법」 발효

영국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2010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을 제정함.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자에게 기술적 제한조치(technical measures)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상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 英, 「2010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공포

-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2010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이 2010년 4월 8일에 확정되어, 2010년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이 법률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디지털 브리튼 백서(Digital Britain White Paper)’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2010년 3월 16일 상원의 1차 검토(first reading)를 시작으로 법률안 의회심의 및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됨.

#### ※ 디지털 브리튼 백서(Digital Britain White Paper)

영국정부는 2008년 가을, 영국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통신분야(communication sector)에서의 디지털 환경 관련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6월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인 「디지털 브리튼 백서(Digital Britain White Paper)」를 발간함. 동 보고서는 통신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경제법·제도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0 디지털 경제법」은 총 48개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가지의 주제로 구분됨. 이 중 저작권 관련 주제는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 (3)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등임.
- 이와 관련하여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 OFCOM)이 핵심 역할을 담당함.
  - ※ 오프콤(OFCOM)은 「2003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해 5개의 영국 통신기관(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Radio Authority, Radiocommunications Agency)이 통합되어 설치된 정보통신 규제기관임.

「2010 디지털  
경제법」의 세부내용

① 온라인 저작권 침해(Online Infringement of Copyright)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침해 고지 의무

- 「2010 디지털 경제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저작권 침해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시 저작권 침해 내용을 담은 ‘저작권 침해 신고서 (copyright infringement report)’와 함께 IP주소, 날짜 등의 증거자료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게 발송해야 함.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침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게 발송해야 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저작권 침해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함.
- ※ 인터넷 침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 저작권 침해 신고서(copyright infringement report)

‘저작권 침해 신고서’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발송하는 문서로 침해의 증거 및 그 증거를 수집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 ① 고지 대상 :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인터넷 회선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그 제3자의 저작권 침해를 허용한 자.
- ② 고지 내용
  - a. ‘저작권 침해 신고서’에 의한 고지라는 내용
  - b. 저작권자의 성명
  - c. 저작권 침해 내용
  - d. ‘저작권 침해 신고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 e. 불복절차(subscriber appeals)
  - f. 합법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 g. 무허가 인터넷 회선의 이용 금지방법
  - h. ‘기타 선행의무에 관한 기준(initial obligations code)’에서 정하는 내용
- ③ ‘기타 선행의무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
  - a.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계속하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
  - b. 저작권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관한 ‘저작권 침해 신고서’의 내용
  - c.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 d. 기술적 제한조치(technic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등

####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침해자료 제공 의무

-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횟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저작권자가 상습적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리스트(copyright infringement list)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저작권 침해 리스트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자의 성명을 익명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선행의무(initial obligation)에 관한 기준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고지 및 자료제공 의무를 선행의무(initial obligation)라고 함. 이 의무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에게 통일된 양식으로 신고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저작권자들의 과도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게 됨.
- 오프콤(OFCOM)은 선행의무에 관한 기준의 제정·수정·점검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권한이 있음. 단, 정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결의(resolution)에 의하여 오프콤(OFCOM)의 행정명령이 취소될 수 있음.
- 선행의무에 관한 기준에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요건(12개월 간의 저작권 침해 보고서 횟수와 기부금 협의 등을 참고하여 선행의무 대상자를 선정), 저작권 침해 사실의 인정 절차, 저작권 침해 증거의 표준, 저작권 침해 신고서의 양식,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불복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오프콤(OFCOM) 보고서 공표

- 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부과한 의무 효과를 확인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추가로 의무를 부과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프콤(OFCOM)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정부에 보고·공표해야 함.
- 오프콤(OFCOM)은 12개월마다 전체보고서(full report)를, 3개월마다 중간보

고서(interim report)를 작성·보고해야 하며, 전체 보고서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정도,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유도한 내용, 저작권 계몽사업, 저작권 침해 신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기술적 제한조치

- 정부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기술적 제한조치(technical measures)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취하도록 오프콤(OFCOM)에 지시할 수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선행의무가 시행된 후 12개월이 지나야 기술적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인터넷 속도 및 대역폭의 제한, 사이트의 폐쇄(site blocking), 계정 정지(account suspension)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오프콤(OFCOM)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기술적 제한조치에 관한 기준(technical obligations code)을 제정할 수 있음.
  - 기술적 제한조치에 관한 기준에는 기술적 제한조치의 집행절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벌금, 손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배상책임, 기술적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절차(subscriber appeals)의 요건,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분쟁해결절차(owner-provider dispute)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불복절차

- 기술적 제한조치의 기준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불복절차와 불복사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불복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기술적 제한조치가 가능함.
- 불복절차에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해당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저작권자 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저작권 침해 사실과 그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계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불복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소요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함.
- 기술적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불복절차 담당기관은 제재조치의 승인

(confirmation), 기각(withdrawal), 다른 제재 조치로의 대체(substitution)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제1심의 중재재판소(first-tier tribunal)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

#### □ 의무의 강제 집행(Enforcement of Obligations)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1) 선행의무를 위반하거나, (2) 기술적 제한조치를 부과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3) 기술적 제한조치와 관련, ‘오프콤(OFCOM)’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5만 파운드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과태료의 상한선 25만 파운드를 초과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 비용의 공동부담(Sharing of Costs)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선행의무 및 기술적 제한조치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고지(notice) 비용, 기술적 제한조치에 소요되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의 비용, 선행의무에 관한 기준(initial obligation code)의 승인 및 준비 비용, 집행 비용,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어야 함.
  -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기술적 제한조치에 불복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계가 펀드를 조성하도록 규정해야 함.
  - 이 규정의 취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고 당사자들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임.

#### □ 인터넷 사이트 폐쇄 명령(Blocking Injunction)

- 영국정부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 및 침해 우려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명령(blocking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provisions)을 이해관계자들의 공청회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음.
- 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명령을 내릴 경우 (1)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접근(access)하지 못하도록 취한 예방조치,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 (3)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는지의 여부, (4) 금지명령이 제3자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 (4)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저작권자가 금지명령을 청구하기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지명령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Penalties)

- 기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은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는 5천 파운드, 스코틀랜드에서는 1만 파운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이 최대 5만 파운드로 증액됨.

## ③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 디지털 출판시대를 맞이하여 「1979 공공대출권에 관한 법률(Public Lending Right Act 1979)」에 오디오북(audio-book)과 전자책(e-book)을 서적(book)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프로듀서(producer)와 내레이터(narrator)도 저작권자의 개념에 포함시킴.
  - 대출(lent out)의 의미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중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까지 확대함.
  - 이번 개정으로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은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audio-book)의 대출을 위해 저작자와 협상할 필요가 없어짐.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OPSI), 2010.4.8)



## 英 위긴(Wiggin)社, 2010년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

엔터테인먼트 전문 법무법인 위긴(Wiggin)社와 엔터테인먼트미디어리서치(Entertainment Media Research)社는 「2010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베이(2010 Digital Entertainment Survey)」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보안(Internet security) 조치 여부', '온라인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불법사이트 합법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자의 대응' 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2010년 5월 26일 발표함

###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분야 이용실태 조사

- 엔터테인먼트 전문 법무법인 위긴(Wiggin)社와 엔터테인먼트미디어리서치(Entertainment Media Research)社는 2010년 5월,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분야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영국의 인터넷 이용자 1,5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함.
- 위긴(Wiggin)社는 동 조사의 결과보고서인 「2010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베이(2010 Digital Entertainment Survey)」를 2010년 5월 25일에 공개함.

###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 □ 인터넷 보안(Internet security) 조치 여부

-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4%가 인터넷에 보안장치를 하여 타인의 불법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응답함.
  - 자신이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못해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1%, 보안장치를 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14%로 나타남.
  - 인터넷 보안 위험군에 포함되는 14%의 응답자는 대부분 젊은 여성과 상대적으로 노년층에 속하는 남성인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 온라인 저작권 침해(online piracy)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25%가 ‘불법사이트의 폐쇄’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습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벌금부과(14%)’,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의무 부과(12%)’, ‘상습침해자에 대한 인터넷 금지조치(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10대 남성(33%)과 35~44세의 여성(30%)이 불법사이트의 폐쇄를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

- 최근의 정부 규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2%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계정(internet account)을 적극적으로 감시(monitoring)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응답함.
- 연령이 높을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35 ~ 44세의 여성(29%)이 같은 연령층의 남성(15%)보다 불법행위 방지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응(전체)

질문 : 불법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정부의 제재조치로부터 당신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항목	비율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45%
가족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한다	22%
인터넷 계정(IP)을 감춘다	18%
부모에 의한 감시를 강화한다	14%
가족구성원이 각자 고유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한다	8%
자녀들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어 콘텐츠 구매를 유도한다	4%
암호 형태(encrypted format)의 저작물만 불법다운로드 한다.	4%
기타	3%

- 한편, 상습적으로(regular) 또는 가끔씩(occasional)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438명에게 동일 질문을 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34%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감춘다’는 응답이 32%, ‘가족의 인터넷 활동(internet activity)을 감시하겠다’는 응답이 20% 등으로 나타남.

〈표 6〉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응(저작권 침해자 응답)

질문 : 불법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정부의 제재조치로부터 당신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항목	비율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34%
가족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한다	32%
인터넷 계정(IP)을 감춘다	20%
부모에 의한 감시를 강화한다	14%
가족구성원이 각자 고유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한다	11%
자녀들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어 콘텐츠 구매를 유도한다	10%
암호 형태(encrypted format)의 저작물만 불법다운로드 한다.	6%
기타	2%

-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24명의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 ‘가족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응답은 24%, ‘부모가 감시하겠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남.

〈표 7〉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응(저작권 비침해자 응답)

질문 : 불법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정부의 제재조치로부터 당신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항목	비율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50%
가족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한다	24%
인터넷 계정(IP)을 감춘다	15%
부모에 의한 감시를 강화한다	11%
가족구성원이 각자 고유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한다	7%
자녀들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어 콘텐츠 구매를 유도한다	3%
암호 형태(encrypted format)의 저작물만 불법다운로드 한다.	1%
기타	4%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저작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59%는 자신의 ‘인터넷 계정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합법사이트(legal services)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응답은 58%,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55%로 나타남.

〈표 8〉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전체)

질문 : 당신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

구분	동의수준
저작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7%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9%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합법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58%
불법사이트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55%
불법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침해한다면 인터넷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55%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ies)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55%
개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보다 불법사이트 접근금지 조치가 더 낫다	52%
3회 경고 후에도 불법다운로드를 계속하는 경우 인터넷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50%
인터넷 계정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터넷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44%
향후 나의 인터넷주소(IP)가 발각되지 않도록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19%

- 한편, 상습적으로 또는 가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438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정부의 제재수단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관련 SW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7%로 나타남.
  - 경고조치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한 경우 인터넷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역시 48%로 비침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9〉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저작권 침해자 응답)

질문 : 당신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

구분	동의수준
저작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6%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합법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49%
불법사이트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45%
불법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침해한다면 인터넷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48%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ies)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51%
개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보다 불법사이트 접근금지 조치가 더 낫다	46%
3회 경고 후에도 불법다운로드를 계속하는 경우 인터넷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49%
인터넷 계정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터넷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41%
향후 나의 인터넷주소(IP)가 발각되지 않도록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37%

□ 불법사이트 합법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자의 대응

- 주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438명에게 주로 이용하는 불법사이트가 유료화 될 경우 대응계획을 물어본 결과, 소액의 월정액(small monthly fee)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난 반면, 다른 무료사이트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남.

〈표 10〉 불법사이트 합법화에 대한 대응

질문 : 만일 당신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사이트가 유료화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항목	비율
소액의 월정액을 지불하더라도 해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44%
다른 무료사이트로 옮기겠다	36%
기타	20%

- 저작권 침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를 위한 적정 월정액을 조사한 결과, 각각 월 3 ~ 3.5파운드(약 5,500원 ~ 6,500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Entertainment Media Research & Wiggin, 2010.5.26)



## 英 오프콤(OFCOM), 「2010 디지털 경제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초안 발표

오프콤(OFCOM)은 「2010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의 후속조치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감소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규제대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규제범위, 소비자의 불복절차 기준 및 저작권 침해 감소를 위한 방안들을 2010년 5월 28일 제시함.

英,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소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 마련

규제대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의 범위

- 영국의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 OFCOM)은 2010년 4월 8일 제정된 「2010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의 적용을 위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 시행규칙 초안을 2010년 5월 28일 발표함.
- 오프콤(OFCOM)은 본 시행규칙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영국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2011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영국 의회가 ‘디지털 경제법률안(Digital Economy Bill)’을 심의할 당시, 대규모의 유·무선(fixed-line and mobile)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규제대상으로 고려함에 따라, 오프콤(OFCOM)은 4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유선 ISP를 우선적 규제대상으로 정함.
  - 현재, 영국에서 4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는 ‘BT’, ‘Talk Talk’, ‘Virgin Media’, ‘Sky’, ‘Orange’, ‘O2’, ‘Post Office’ 7개가 있음.
- 오프콤(OFCOM)은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한 후, 상황에 따라 규제범위(the scope of the code)를 확대할 예정임.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규제범위

- 오프콤(OFCOM)은 ISP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해야 하는 저작권 침해자 리스트(copyright infringers list)의 세부내용을 제시함.
  - 리스트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게 보낸 저작권 침해 고지(notification) 횟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serial copyright infringers) 명단(익명) 등이 포함됨.
- 저작권자(copyright holders)는 ISP에게 이 명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court order)을 통해 상습적 저작권 침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ISP는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3단계에 걸쳐 위반고지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1년에 3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고지를 받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의 불복절차 (appeals process)

- 오프콤(OFCOM)은 소비자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복절차 기구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제3자가 운영하게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고지 또는 저작권법의 강제집행(enforcement)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불복절차에는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ISP와 저작자 간의 분쟁조정절차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규칙(code)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조정절차도 포함됨.

## 저작권 침해 감소를 위한 기타 방안

- 이외에도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자 교육(consumer education), 상습적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legal action)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
  - 오프콤(OFCOM)은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를 거두는지 살펴보고 그 경과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임.

(OFCOM, 2010.5.28)



## 스페인 지적재산관리협회(SAGE), 공CD 제조업체에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복제장치 및 공미디어 제조회사 등에 대해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스페인의 지적재산권관리협회(SAGE)는 파다완(Padawan)사가 제조한 모든 공미디어에 대해 저작권 보상을 청구하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ECJ)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저작물을 사적복제(private copying) 할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페인 지적재산권 관리협회(SAGE), 파다완(Padawan)사에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 유럽연합(EU)의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허용함.
  - 이 지침에 따라 스페인은 디지털 복제장치와 공미디어(digital reproduction equipment, devices and media) 제조업체, 수입회사 및 판매업자의 전 제품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 스페인의 지적재산권관리협회(Sociedad General de Autores y Editores; SGAE)는 스페인 법률에 의거, 파다완(Padawan)사에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사적복제 보상금으로 총 16,759.25유로(약 2천5백만원)를 청구함.
  - ※ 파다완(Padawan)사는 공CD-R, CD-RW, DVD-R, MP3 플레이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 스페인 법원은 보상료 규정(rule)이 관련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001/29/EC)에 저촉되는지,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보상(fair compensation)’의 개념이 국내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유럽연합(EU)의 최상위 재판소로서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조약 및 법규 준수를 임무로 함. 유럽사법재판소는

각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27명의 재판관(judge)과 8명의 법무관(advocate general)으로 구성됨.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판사는 아니지만 재판에 참여하며, 재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법무관의 의견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은 사실상 이 의견을 따르고 있음.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적복제를 위해  
이용된 제품에 한해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

- 2010년 5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파다완(Padawan)社가 판매한 전체 공미디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사적복제의 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한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베리카 트레스텐자크(Verica Testenjak)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스페인 측이 파다완(Padawan)社가 제조한 모든 공CD와 공DVD 등에 대해 보상금(levy)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적복제(private copying)의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한해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힘.
- EU 지침 상에 규정된 ‘적절한 보상(fair compensation)’이란, 독립적인 EU 공동체법의 개념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이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각 회원국들은 해당 유럽연합(EU) 지침의 공동체법 개념에 부합하고 각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정할 수는 있음.
- EU 지침은 각 회원국들이 보상금 산정에 있어 각 회원국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법률을 정할 광범위한 입법권한(wide discretion)을 부여하고 있음.
  - 각 회원국은 보상금 납입자와 징수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적절한 보상(fair compensation)’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복제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의 합당한 보상금(appropriate reward) 지급을 의미하며, 저작물 복제와 보상금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즉, 사적복제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디지털 복제장치 및 공미디어에 무차별적으로 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유럽연합(EU) 지침에 규정된 적절한 보상(fair compensation)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의 보상료 규정이 유럽연합(EU) 지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0.5.11)



##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회원국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제시

유럽집행위원회(Europe Commission)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 온라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5월 19일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를 발표하고 국가간 이용허가절차(cross-border licensing)의 간소화를 위한 세부계획안을 제시함

### 유럽집행위원회(EC) 「디지털 경쟁력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의 디지털 환경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라 함)는 2010년 5월 17일 유럽 정보사회의 발전 상황을 분석한 「디지털 경쟁력 보고서(Digit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에는 2009년도 기준, 정기적(일주일에 1회 이상)인 인터넷 이용인구가 유럽 인구의 60%에 이를 만큼 유럽 디지털 경제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광대역 통신망(broadband) 이용자는 유럽 인구의 60%이며, 이는 유럽 전체 가구의 56%, 유럽 전체 기업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9년 유럽연합(EU)의 고정 광대역 통신망(fixed broadband) 보급률(penetration rate)은 24.8%(2008년 대비 2.3% 증가)로 나타남.
  - 그러나, 최고 속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정 광대역 통신망의 80%가 2Mbps이고, 18%가 10Mbps에 불과함.
- 현재의 인터넷 속도로 볼 때 기본적인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이메일, 웹 브라우징, 단일 채널 IPTV) 이용은 가능하나, HD TV,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원격의료(telemedicine), 지능형 교통(intelligent transport), 쌍방향 학습(interactive learn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다 더 빠르고 향상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high-speed broadband)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로 인해 유럽기업들은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구축을 기피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확실한 수요와 규제방식으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물품 가격이 투명해져 단일시장(single market)이 더욱 더 견고해질 수 있으나, 국가간 무역(cross-border trade)은 저조한 실정임.
- 인터넷 이용자의 54%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만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23%만이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 저작권 이용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안을 제시함.
- 2010년 5월 19일 EC는 「디지털 어젠더(Digital Agenda)」를 통해 향후 10년간 유럽연합(EU)의 입법과 정책의 지침이 될 7가지 목표를 제시함.

유럽 저작권  
이용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 디지털 어젠더(Digital Agenda)

- (1) 디지털 시대의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단일시장 구축
- (2) 정보통신기술의 기준설정(standard-setting)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
- (3) 신뢰도와 보안성 제고
- (4) 초고속 인터넷망 이용자 수 확대
- (5)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 (6)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의 증가
-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이익 증대

- EC는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함.
  - 유럽의 온라인 시장은 유럽 회원국 간에 분리되어 있어 범유럽 통신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이에 저작권의 허가·관리 및 국가간 이용허가절차(cross-border licensing)를 단순화하여 온라인 합법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계획을 제시함.

- ① EC는 2010년 내에 「저작권집중관리체계에 관한 지침(Framework Directive o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 관리구조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범유럽 이용허가제도(pan-European licensing)의 도입을 추진함.
  - ※ '범유럽 이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계약의 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허가국 선택 및 국가별 저작권이용료 책정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 ② 2010년까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Orphan Works)」을 제시함으로써 문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체계를 마련함.
- ③ 2012년까지 「공공 정보의 재이용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검토하고, 특히 재이용에 대한 이용료 부과범위와 원칙에 대해 검토함.

(EUROPA, 2010.5.19)



## 유럽 16개 저작권 관련 단체, 유럽연합(EU) 차원 저작권 예외규정 마련 위한 공동선언

유럽의 저작권 관련 16개 단체는 2010년 5월 4일 「창조성을 위한 저작권 - 유럽선언문(Copyright for Creativity-A Declaration for Europe)」에 공동서명하고, 저작권의 예외조항을 범유럽적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함

유럽 저작권 관련 16개 단체, 저작권 제도 개혁 요구를 위한 공동선언

- 유럽ISP협회(European ISP Association), 유럽도서관정보문서연합(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유럽소비자협회(European Consumers' Organization) 등 16개 기관은 2010년 5월 4일 지식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창조성을 위한 저작권 - 유럽선언문(Copyright for Creativity - A Declaration for Europe)」에 공동서명함.

### ※ 16개 단체 리스트

- 유럽소비자단체(The European Consumers' Organization; BEUC)
-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
- 유럽도서관정보문서연합(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EBLIDA)
- 유럽디지털권리단체(European Digital Rights; EDRi)
-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 도서관전자정보단체(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eFL)
- 유럽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European ISP Association; EuroISPA)
-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FSFE)
- 독일도서관협회(German Library Association; GLA)
-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 국제음악매니저포럼(International Music Managers' Forum; IMMF)
- 아이피 저스티스(IP Justice)
- 국제지식생태계기구(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
- 유럽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LIBER))
- 권리개방그룹(Open Rights Group; ORG)
- 특수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SLA)

- 이들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저작권 보호로 인해 지식기반 상품과 서비스가 유럽 전역에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유럽 저작권 예외규정(공정이용규정)의 유통성 부족으로 기술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저작권의 예외규정에 관한 선언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요구함.
  - 이미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8년도에 저작권 제한규정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지식경제에서의 저작권(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을 발간한 바 있으며, (1) 도서관과 기록물 보관소(archives)에 대한 예외, (2) 교육과 연구목적을 위한 저작물 배포에 관한 예외, (3) 장애인에 대한 예외, (4) UCC에 대한 예외 등 네 가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상기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유럽차원의 통일된 저작권 제한규정 마련
    - 저작권은 단일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용행태와 지식상품(knowledge goods)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성(equality)과 명확성(clarity)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작권 제한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② 저작권 혁신(innovation) 방안 마련
    -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방대한 양의 지식과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 제한규정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이용을 증대해야 함.
  - ③ 이용자 창작 및 참여 지원
    - 인터넷을 통해 개인은 방송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콘텐츠와 지식에 있어 능동적인 창작자와 참여자로 변화·관여하게 되었음. 따라서 유럽의 창작성, 문화적 다양성 및 자기표현(self-expression)을 장려해야 함.

공동선언문의  
세부내용

④ 전 유럽인의 접근성 보장

-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고려할 때 대중의 이익과 창작자 권리보호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들 또한 지식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⑤ 교육과 연구 지원

- 교육 및 연구자료의 개발 및 이를 공유하기 위해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기반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해야 함.

⑥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보관 촉진

-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면 유럽의 지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및 보존이 용이해 지므로 이를 위한 저작권 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⑦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한

- 저작권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에 대한 균형책(counter-balance)으로 저작권 제한규정이 있음. 창작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인 권리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제한되어야 함.

⑧ 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 촉진

- 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원칙과 목적은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양자 및 다자간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

※ 참조

<https://www.copyright4creativity.eu/bin/view/Main/Declaration>, 2010.5.4

<https://www.copyright4creativity.eu/bin/view/Main/SignersPressContacts>, 2010.5.4



## 유럽의회 녹색당, 저작권자 보상 및 문화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녹색당(Green Party)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안정과 문화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6월 8일 토론회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방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유럽의회의 녹색당, 저작권자 보호와 문화향유를 위한 회의 개최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녹색당(Green Party)은 2010년 6월 8일 저작권자의 경제적 생활 보장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문화생활 향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는 유럽의 저작권 관련 규정이 새로운 인터넷 환경 규제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함.

※ 유럽의회 녹색당(Green Party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EP) 의원 총수 736명 중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책임(environmental responsibility),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 포괄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 다양성(diversity),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양성 평등(gender equality), 글로벌 지속가능 개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및 비(非)폭력(non-violence)을 표방함. 최근 녹색당은 유럽의 통합을 반대하는 기존 노선을 포기하고 유럽 공동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음

- 녹색당의 에바 리히텐베르거(Eva Lichtenberger) 오스트리아 대표는 예술가(artists)들에게 적절한 생활보장을 해줌으로써 문화창작활동(culture and creative activity)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녹색당 소속 카리마 델리(Karima Delli) 프랑스 대표는 현재 전 세계 16억명이 파일 복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공유(shared culture)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경제모델(new economic models)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저작권자 보상에 대한 논의

### □ 인터넷 이용료로 저작권자 보상기금 마련

- 프랑스 ‘인터넷시민단체(La Quadrature du Net)’의 설립자인 필립 아이그랑(Philippe Aigrain)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subscribers)이 매달 5~7유로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금(fund)을 마련해 온라인 저작물의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제안함.
-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지를 익명으로 작성한 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인터넷 이용료 징수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각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임.
- 이 방안에 따라 징수되는 이용료는 프랑스에서만 매년 12~1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액수는 프랑스 전체 문화경제(cultural economy) 예산의 1/20에 해당함.
- 시청각 저작물(audiovisual work)의 경우, 수익금의 1/3은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2/3는 새로운 작품의 창작에 지원됨.
- 음악 저작물에 대한 수익금 분배의 경우 수익금의 2/3를 저작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은 새로운 음악작품을 창작하는데 쓰임.
- 음악 저작물에 대한 수익금 분배가 시청각 저작물과 다른 이유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보다 음반을 제작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임.

### □ 인터넷 이용자들의 선정에 의한 보상

-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러트 베이(Pirate Bay)’의 피터 썬데(Peter Sunde) 대변인은 ‘소액 기부금제(micro-donations)’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
- 소액 기부금제 방식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가 매월 2~100유로의 정액요금을 지불하고, 자신들이 보상(reward)하기 원하는 저작물을 지명(nominate)할 수 있음.
- 이 방식은 ‘페이스북(Facebook)’이라는 웹사이트의 ‘내가 좋아하는(I like)’이라는 버튼 클릭 방식과 유사하지만, 자신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저작물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상이함.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에 대한 논의

□ 인터넷 이용자 단체에 의한 저작권 보호

- 스페인 ‘인터넷이용자단체(Spanish group Asociación de Internautas)’의 오펠리아 테제라나(Ofelia Tejerina)는 소수 대기업이 저작권 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상황은 적절치 않으며, 인터넷 이용자 단체(user organisations)가 직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작권집중단체들은 저작권료 징수업무를 맡아 음악 작곡가나 작사가들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저작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음.
- 베를린과 동경 및 상파울로에 소재한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디어 사회학자(media sociologist) 폴커 그라스무크(Volker Grassmuck)는 많은 유럽 회원국들이 저작권료 징수단체를 마피아(Mafia)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함.
- 폴커 그라스무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50%가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서비스(certain service)에 대해 요금을 지불할 의사(willingness)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 인터넷 무료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최근 실시된 기금조성행사 중 23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8백만 달러를 모금함. 또한, 영국의 허트포드셔 대학교(Hertfordshire University)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5%가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 필요

- 영화산업 대표단체인 오디오영상작가협회(Society of Audiovisual Authors)의 세실 데스프링어(Cécile Despringre) 회장은 저작권 집중관리(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제도는 창작작업을 보상(rewarding creation)하는 최적의 시스템(best system)이라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대변함.
- 특히, 음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을 영화제작 분야에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집중관리제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함.
- 다만, 현행 저작권료 징수방식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개선방식을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강구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 슬로베니아(Slovenia)의 지적재산권연구소(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마야 보가타지 얀시크(Maja Bogataj Jancic) 소장은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greatest threat)임과 동시에 가장 큰 기회(greatest opportunity)라고 주장함.
  - 이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해 저작물의 무단 이용 및 파일공유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임.
  - 한편, 2009년 말 세계적으로 약 35억개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 Licenses: CCL)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 Licenses: CCL)'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license)임.

### ※ 참조

<http://www.ip-watch.org/weblog/2010/06/09/new-business-models-proposed-in-debate-on-eu-culture-and-copyright>, 2010.6.9

[http://www.greens-efa.org/cms/default/dok/342/342613.financing\\_culture\\_in\\_the\\_digital\\_era@en.htm](http://www.greens-efa.org/cms/default/dok/342/342613.financing_culture_in_the_digital_era@en.htm), 2010.6.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국제기구

---

BSA, 2009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발표

| 104 |

유네스코,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 구축

| 110 |

---



## BSA, 2009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발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와 글로벌 리서치사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0년 5월 「2009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Global Software 09 Piracy Study)」를 통해 경기침체가 SW 침해에 미치는 영향과 2009년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및 불법복제 감소 성과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 BSA, 2009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와 글로벌 리서치사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0년 5월, 「2009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Global Software 09 Piracy Study)」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BSA와 IDC가 세계의 SW 불법복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수행·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음.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는 SW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SW업체들로 구성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사무용 SW의 불법복제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산정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BSA의 SW 불법복제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작성함.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통신, 컨슈머 테크놀로지 부문 산업분석 및 컨설팅 기관임.

- 「2009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는 경기침체(recession)가 SW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과 2009년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및 불법복제 감소 노력으로 인한 2009년의 성과 등 SW 침해에 대한 조사결과가 담겨 있음.

### 세계경제와 SW 불법복제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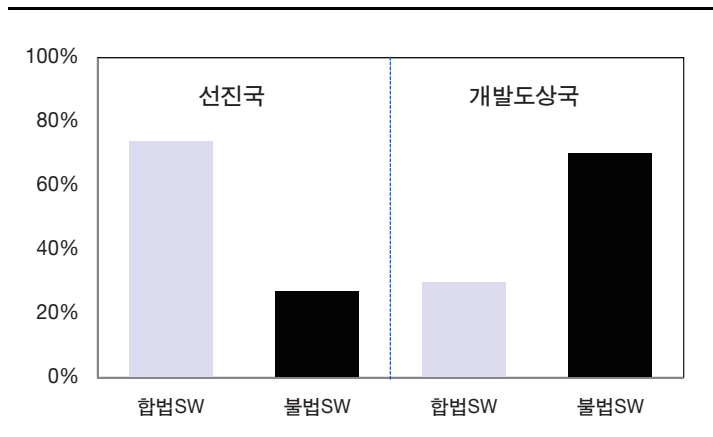
#### □ 2009년의 경기침체에 따른 불법 SW 이용 증감을

-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났던 2009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가 불법 SW 이용을 촉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불법 SW 설치율은 세계 111개국 중 54개국에서 감소, 19개국에서 증가하였음.
  - 이는 SW업계, 정부 및 사법계의 불법복제 방지교육 및 캠페인 등으로 인해 SW의 합법적 구매와 이용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2009년도 세계 SW 불법복제율(piracy rate)은 2008년에 비해 약 2% 증가한 약 4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급격한 PC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참고로 이들 3개국은 PC시장 성장률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음.
  - 즉, 브라질, 인도, 중국에서 증가하는 SW의 불법 공유가 세계 SW 불법복제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을 의미함.

- SW 불법복제는 시장형태에 따라 규모에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불법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 시장형태에 따른 SW 불법복제율(2009)



- 「2009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2009년 SW 불법복제율(piracy rates)은 약 41%로, 불법 SW로 인한 피해 규모는 5억 7,500만 달러임.
-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전년대비 약 2% 감소하였으며, 세계 평균치(43%) 보다는 낮지만 OECD 평균치(27%)보다는 높게 나타남.

2009년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및 성과

〈표 11〉 연도별 주요국의 SW 불법복제율 및 불법 SW로 인한 피해 규모

국가명	불법복제율					불법 SW로 인한 피해 규모(단위 : 백만 달러)				
	2009	2008	2007	2006	2005	2009	2008	2007	2006	2005
미국	20%	20%	20%	21%	21%	8,390	9,143	8,040	7,289	6,895
중국	79%	80%	82%	82%	86%	7,583	6,677	6,664	5,429	3,884
러시아	67%	68%	73%	80%	83%	2,613	4,215	4,123	2,197	1,625
프랑스	40%	41%	42%	45%	47%	2,544	2,760	2,601	2,676	3,191
브라질	56%	58%	59%	60%	64%	2,254	1,645	1,617	1,148	766
독일	28%	27%	27%	28%	27%	2,023	2,152	1,937	1,642	1,920
인도	65%	68%	69%	71%	72%	2,003	2,768	2,025	1,275	566
일본	21%	21%	23%	25%	28%	1,838	1,495	1,791	1,781	1,621
이탈리아	49%	48%	49%	51%	53%	1,733	1,895	1,779	1,403	1,564
영국	27%	27%	26%	27%	27%	1,581	2,181	1,837	1,670	1,802
멕시코	60%	59%	61%	63%	65%	1,056	823	836	748	525
스페인	42%	42%	43%	46%	46%	1,014	1,029	903	865	765
캐나다	29%	32%	33%	34%	33%	943	1,222	1,071	784	779
인도네시아	86%	85%	84%	85%	87%	886	544	411	350	280
태국	75%	76%	78%	80%	80%	694	609	468	421	259
베네수엘라	87%	86%	87%	86%	82%	685	484	464	307	173
아르헨티나	71%	73%	74%	75%	77%	645	339	370	303	182
한국	41%	43%	43%	45%	46%	575	622	549	440	400
호주	25%	26%	28%	29%	31%	550	613	492	515	361
네덜란드	28%	28%	28%	29%	30%	525	563	502	419	596
폴란드	54%	56%	57%	57%	58%	506	648	580	484	388
말레이시아	58%	59%	59%	60%	60%	453	368	311	289	149
터키	63%	64%	65%	64%	65%	415	468	365	314	268
베트남	85%	85%	85%	88%	90%	353	257	200	96	38
스위스	25%	25%	25%	26%	27%	344	345	303	324	376
남아프리카공화국	35%	35%	34%	35%	36%	324	335	284	225	212
칠레	64%	67%	66%	68%	66%	315	202	187	163	109
스웨덴	25%	25%	25%	26%	27%	304	372	324	313	340
사우디아라비아	51%	52%	51%	52%	52%	304	272	170	195	178
우크라이나	85%	84%	83%	84%	85%	272	534	403	337	239
세계	43%	41%	38%	35%	35%	51,411	52,998	47,809	39,698	34,482
유럽연합	35%	35%	35%	36%	36%	12,469	13,981	12,383	11,003	12,048
BRICs	71%	73%	75%	77%	81%	14,453	15,305	14,429	10,049	6,841

※ 출처 : BSA/IDC(2010), 「7th Annual BSA/IDC Global Software 09 Piracy Study」

○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0%), 일본(21%), 룩셈부르크(21%)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불법 SW의 피해 규모는 미국 83억 9,000만 달러, 일본 18억 3,800만 달러, 룩셈부

크크가 3,000만 달러로 나타남.

- 세계 전체 불법복제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브릭스(BRICs) 시장의 불법 복제율은 중국 79%, 러시아 67%, 인도 65%, 브라질 56%로 나타남.
  - 불법 SW의 피해 규모는 중국 75억 8,300만 달러, 러시아 26억 1,300만 달러, 인도 20억 300만 달러, 브라질 22억 5,400만 달러로 조사됨.
- 동 보고서는 SW 침해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2009년에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 a. SW 제조업자(manufacturers)는 정부를 상대로 대량판매를 통한 저가의 SW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불법복제율 이용을 낮추고, 정부가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함.
- b.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하드웨어 시스템에 SW를 설치하여 출고하게 함.
- c.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와 같은 진보된 기술이용을 통해 고객의 자체 점검을 가능케 하고, 불법 SW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함.
- d. SW의 구매, 설치, 유지, 이용 및 처리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SW 자산관리프로그램(SW asset management programs; SAMP)'의 활용 증대 및 비용 절감효과 홍보.
- e. 교육, 법 집행(enforcement), 침해방지(anti-piracy)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 체계 확립 및 지적재산권 관심도 제고를 위한 로비활동 증대.

## SW 불법복제의 영향요인

###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컴퓨터 환경의 복잡화 및 인터넷 접속 증가는 신개념의 SW 모델을 창출함.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의 일종인 SaaS(Software-as-a-Service)는 컴퓨터 SW 이용방식을 바꾸고 있음.

####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리소스(resource)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임. 즉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등 IT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기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함.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편리성이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커서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음.

- 2009년 SaaS시장은 약 130억불로 SW시장의 약 5%에 해당하며, 시장성장률은 SW시장의 5배 이상으로 추산됨.
  - 현재 SaaS가 SW 불법복제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향후 SaaS 증가에 따라

영향력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됨.

□ 무료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 SW를 무료로 공개하여 이용을 허가하는 프리웨어 SW(freeware software)와 오픈소스 SW(open source software) 역시 SW 불법복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미미한 편임.

-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무료 SW의 시장점유율은 일반적으로 12 ~ 22%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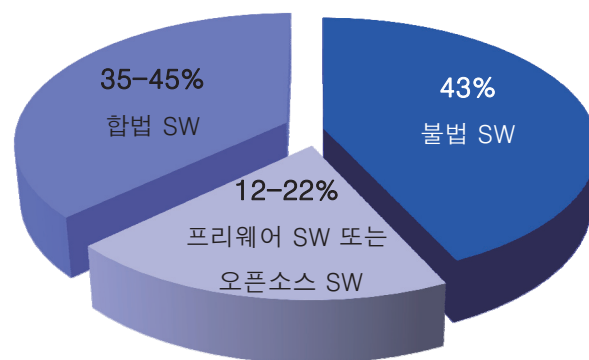
※ 프리웨어 SW(Freeware Software)

원저작자가 금전적인 제권리를 보류하여 일반의 무료이용을 허가한 공개 SW를 말하며, 프리웨어(freeware) 또는 온라인 SW라고도 함. 프리웨어 라이선스에는 통상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배포금지 등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 오픈소스 SW(Open Source Software)

OSS라고도 하며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그 SW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SW를 말함.

〈그림 3〉 SW 유통형태에 따른 시장점유율



\* 트라이얼 & 베타 SW, 유틸리티, 드라이버는 집계에서 제외됨

※ 출처 : BSA/IDC(2010), 「7th Annual BSA/IDC Global Software 09 Piracy Study」

BSA가 제시한 불법 SW 감소를 위한 5대 방안

□ 전세계 불법복제 SW 감소를 위한 5대 방안

① 공공의 인식제고

- SW 불법복제 감소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임. 정부는 대중에게 불법 SW의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창작물의 중요성과 합법적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WIPO 저작권 조약의 이행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6년 디지털 및 온라인 불법복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ies)을 채택하였으며, 각 국가들은 이 조약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③ 강력한 집행구조 마련

- 강력한 저작권법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TRIPS 규정 에 부합하는 법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④ 자원 투입 확대를 통한 집행력 강화

- SW의 불법복제는 형사상의 범죄 또는 처벌과 달리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식재산 침해조사 및 소송을 위한 자원 투입 하에 강력한 집행구조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찰 및 기타 집행기관과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법집행 담당자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⑤ 정부의 솔선수범

- 정부 스스로 SW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SW 침해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함. 이는 'SW 자산관리정책(SW asset management policies)'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임.

(BSA, 2010.5)



## 유네스코,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 구축

유네스코(UNESCO)는 2010년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을 기념하여 저작권 침해관련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인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World Anti-Piracy Observatory; WAPO)」을 구축·운영함

유네스코(UNESCO),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WAPO)」 구축

-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2010년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을 기념하여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World Anti-Piracy Observatory; WAPO)」을 구축함.

###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

- 유네스코(UNESCO)가 1995년 UN 총회에서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로 정한 날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며, 출판산업 종사자들로 대표되는 국제심사위원단이 매년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를 지정하고 있음.
- 2010년 '세계 책의 수도'로는 슬로베니아(Slovenia)의 류블랴나(Ljubljana)가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로 예정됨.

-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WAPO)」은 불법복제 제재방안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free online platform)으로,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축됨.
  - 동 감시시스템은 2005년에 개최된 국제저작권컨벤션(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제13차 회의(13th session)에서 최초로 필요성이 제기됨.
- 유네스코(UNESCO)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저작권 법령, 뉴스, 행사, 모범사례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임.

- 현재 침해방지에 대한 100여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인식 증진 (awareness-raising) 및 역량개발(capacity-building)을 위한 툴(tool)을 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각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작가협회, 다양한 문화산업 협회들(cultural industries associations) 또한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WAPO)」의 업데이트에 참여 하게 됨.
- 향후, 저작권자들은 동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적 저작권 보호동향 및 관련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외국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UNESCO, 2010.4.22)



해외조사 10-03

QUARTERLY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전제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 저희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고 저작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발 행 일 : 2010년 8월
- 발 행 인 : 서 훈
- 기획·제작 : 조사홍보팀
- 등록일자 : 2009년 12월 11일
- 등록번호 : 마포-바-00018
- 발 행 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본 책자는 환경 보존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지를 재활용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Vol.3 SUMMER 2010 | The second quarter of the year

# | GLOBAL COPYRIGHT | PROTECTIO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KOREA PROTECTION CENTER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2번지 문화콘텐츠센터 10층

Tel \_1588-0190 Fax \_02-3153-2708

[www.cleancopyright.or.kr](http://www.cleancopyright.or.kr)